

발간등록 번호
진흥원-2025-310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활용 안내

1. 목적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이 영유아 보호자로부터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육교직원이 직무스트레스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활동 침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육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절차를 안내하는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함
- 본 가이드라인은 보육교직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호자에게는 보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활용 유의사항

- 본 가이드라인의 대응 절차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례로 제시된 유사한 경우라도 보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장소, 시기, 내용, 방법, 대상, 범위 등에 따라 동일한 적용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하는 것을 권장함
-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관련 판례’는 유사 사례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사례별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모든 사례에 확대해석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3. 구성방향

-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적 지원 정보 제공**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침해 대응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정책적 지원 내용의 정보를 제공함

- **보육활동 침해의 개념 명확화 및 유형 분류**

보육활동의 정의 및 침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 **현장 중심 침해 사례 및 다양한 예시 제시**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침해 현황을 제공하고, 침해 유형별 직접 경험한 사례와 함께 다양한 예시를 제시함

- **침해 대응절차 및 구체적 상호작용 예시 제시**

보육활동 침해 상황 대응에 익숙지 않은 보육교직원을 위해, 대응절차와 함께 구체적인 상호작용 예시를 제공함

-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 제시**

보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원장, 보육교사, 보호자가 각각 실천해야 할 기본 역할과 실천 내용을 제시함

CONTENTS

I	보육활동 보호에 대한 이해	
	1.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2
	2.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5
	3. 보육활동 침해 개념 및 정의	7
II	보육활동 침해 유형	
	1. 보육활동 침해 유형	10
	2.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개념 및 사례	13
III	보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	
	1. 원만한 대응 :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 선택	38
	2. 원칙적 대응 : 공식적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 선택	44
	3.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통한 보육활동 보호 심의 절차	53
	4.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장-교사-부모의 역할	58
IV	부록	
	1. 관련 서식	64
	2. 유관기관 서비스	78
	3.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87
	4.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99
	5. 보육활동 침해 현황	104

I

보육활동 보호에 대한 이해

● 1.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2
● 2.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5
● 3. 보육활동 침해 개념 및 정의	7

01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 보육활동 중 발생하는 침해로부터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육활동 보호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영유아보육법」(2024.8.7.시행) 및 동법 시행령(2024.8.7.시행) 개정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및 관련한 시책 수립과 보육활동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체계 구축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원장 및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와 이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하는 보호자의 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보육활동 보호에 대한 법률 개정은 보육교직원을 근로자로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육전문가로서의 교육적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을 반영한 것임
-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은 보육활동 수행 중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게 됨

202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 주요 내용 안내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영유아보육법 바로가기〉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3.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정서 관련 상담
5.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1.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2.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18조의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02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 교육부는 보육활동 침해로부터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함(2025.5.시행)
- 이 계획은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 또한,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의 상호 존중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보육활동 기준 마련 및 침해 예방, 침해 행위 조사관리 및 보호조치,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분쟁의 조정지원, 보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및 지원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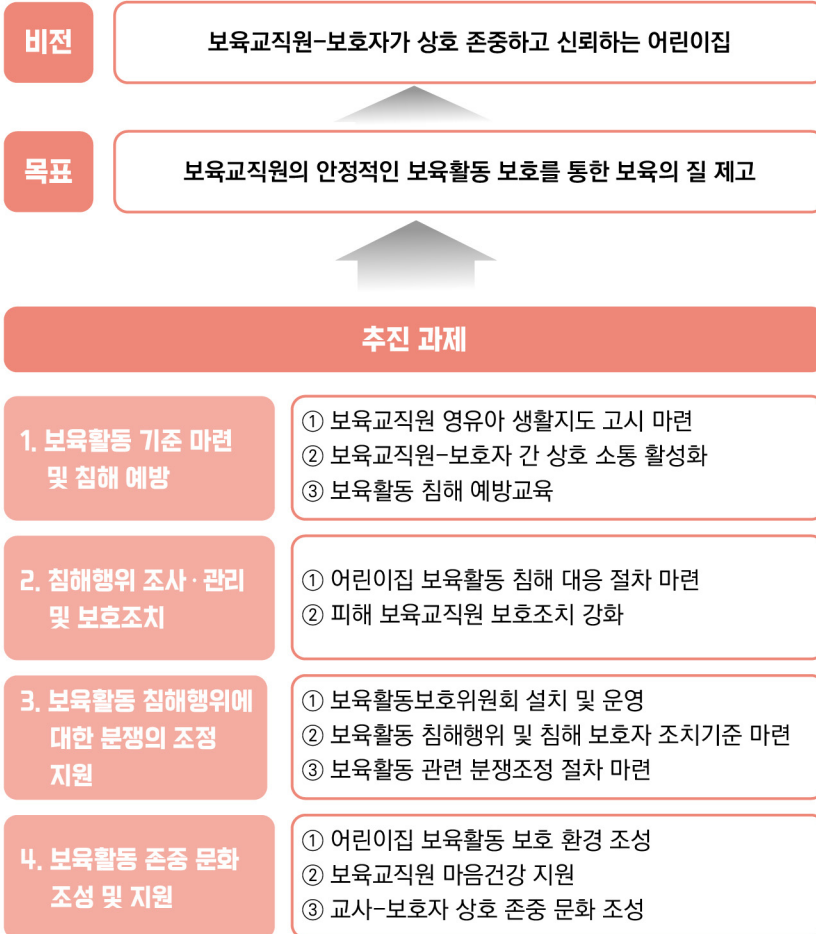
☑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보육활동 기준 마련 및 침해 예방
 -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간 상호 소통을 활성화하고 예방교육을 통해 보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침해 행위 조사관리 및 보호조치
 - 보육활동 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자체 조정력을 강화하며,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분쟁의 조정지원
 -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 조치 기준, 분쟁조정 절차 등 공정하고 구속력 있는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및 지원

-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며 보호자와의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03

보육활동 침해 개념 및 정의



보육활동

- 보육활동이란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원장의 관리·감독 하에 어린이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대소집단·개별 활동, 놀이, 행사, 등·하원, 영유아의 생활지도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함

보육활동 침해

- 보육활동 침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외라도 보육활동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상 모욕,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보육활동 침해 행위의 대상

- 보육활동 침해 행위의 대상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보육교사임

보육활동 침해 행위자

- 보육활동 침해 행위자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로 영유아의 학부모, 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보호자에 포함됨

II

보육활동 침해 유형

- 1. 보육활동 침해 유형 10
- 2.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개념 및 사례 13



01 보육활동 침해 유형

※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정의와 유형은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체계 개발 연구」 및 「교원지위법」등을 기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내 보육활동 침해 유형을 법제화할 예정임('26년)

☑ 보육활동 침해의 유형

- 침해 유형은 형법(무고,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손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불법정보 유통 행위), 무단촬영 및 녹음 배포행위, 성희롱, 반복적 민원제기, 부당업무 강요 및 부당간섭 행위,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등이 있음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 유형〉

침해유형	정의	예시	법적 근거
무고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	·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보육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허위로 밝혀진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
상해와 폭행	· 보육교직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	· 야구방망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교사에게 골절상을 입히는 경우,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목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형법 제257조 (상해) 형법 제260조 (폭행)

침해 유형	정의	예시	법적 근거
협박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보육교직원에게 공포심을 줄 목적으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통고하는 것으로,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거나,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을 올려 보육교사 일을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형법 제283조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영유아의 보호자가 다른 부모들에게 교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죄)
업무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	·보호자가 보육활동 중인 보육실로 쳐들어와 위력을 행사하며 큰소리로 허위사실을 말하고 교사를 밀쳐서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손괴	·어린이집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보호자가 화가 난다고 어린이집 놀이기구를 부수는 등 어린이집 시설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성폭력 범죄	·강제추행, 강간, 공중 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등 행위	·보육교사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보육교직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성희롱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보호자가 보육교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 하여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침해 유형	정의	예시	법적 근거
불법정보 유통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육교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육교직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	· 카카오톡, 메신저, 인터넷 카페에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글을 올리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 및 녹음, 배포행위	·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 모르게 녹음기를 이용하여 보육교사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 보호자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보호자가 개인적인 불만으로 어린이집이나 관할 관청에 매일 반복적으로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부당업무 강요 행위	· 보육교직원의 법적 의무나 직무 범위가 아닌 일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자기 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거나 보육교직원의 업무와 상관없는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	
보육활동 부당 간섭행위	· 정당한 보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보호자가 자녀의 보육활동에 과도하게 간섭하며 교사의 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수정하도록 강요하여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	·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보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활동에 따라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는데 이에 협조하지 않고 보육교직원에게 폭언, 협박, 폭행 등을 하는 경우	

※ 일부 보호자 등의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의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등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 처벌에 해당 될 경우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 가능

02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개념 및 사례



1

무고

개념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

법적근거 : 형법 제156조(무고)

무고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보육교직원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nput type="checkbox"/>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input type="checkbox"/>
허위 사실(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input type="checkbox"/>
관할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무고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외국인 자녀와 한국인 자녀 둘이 다투는 상황에서 제가 외국인 부모에게 통역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외국 아이 편을 든다며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내용에는 제가 하지도 않은 '고함지르거나 아이 등을 꼬집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허위 사실이 적혀있었어요. 그로 인해 저는 교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원장님도 스트레스에 시달려 건강상태가 나빠졌어요.”

* 현장사례 재구성

예시

- 아이에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행한 사실에 대해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보육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허위로 밝혀진 경우
- 아이를 혼내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CCTV를 통해 보호자와 교사가 함께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집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교사를 정서적 학대로 시정애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함

판례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부모가 만 4세인 자녀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자녀를 선생님이 학대했다고 경찰에 신고함.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교사가 학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 이러한 허위 신고로 인해 교사는 억울하게 수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의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교사에게 발생하는 낙인효과까지 고려하여 부모에게 무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고단692판결]



참고: 무고죄 판단기준 관련

무고죄 판단기준

- 신고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신고 내용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6.9.28. 선고 2006도2963 판결 참조)
-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무고죄 성립되지 않음 (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참조)

2

상해와 폭행

개념 보육교직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

법적근거 : 형법 제257조(상해), 형법 제260조(폭행)

● 상해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보육교직원의 신체에 대하여	<input type="checkbox"/>
몸에 상처를 입거나 신체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등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 폭행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보육교직원의 신체에 대하여	<input type="checkbox"/>
직접적인 유형력(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행사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 폭행은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위협적 행동이 있으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 (예: 손으로 밀치기, 물건을 던지기, 위협적으로 다가가기 등)

● 상해·폭행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재원생 중 발달 지연 및 ADHD 증상이 의심되어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관련 정보 및 지원 사항을 안내했어요. 그런데 보호자는 아이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안내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의 역할을 잡아 흔들고 욕을 했어요."

* 현장사례 재구성

예시

- 보호자가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하여 보육교사와 상담 중에 역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 아동학대를 의심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난입하여 보육교사의 어깨를 손, 어깨, 몸 등으로 밀친 경우
- 보육교사와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팔이나 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경우
- 야구방망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교사에게 골절상을 입힌 경우
- 교사에게 유·무형, 직·간접 수단을 사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우울증 등)를 발생하게 한 경우

판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전화 통화와 같은 비접촉적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참고: 상해와 폭행 관련

「형법」에 따른 상해·폭행죄 처벌

- 「형법」 제257조(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불안감 조성)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폭행죄 판단기준

-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목적·정도·정황,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의 유무와 수준, 행위자의 의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상해 인정 기준

- 정신적 건강 훼손도 포함**
 상해에 해당하는 신체의 건강 훼손 또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 장애에는 육체적 부분 뿐 아니라 정신적 부분도 포함되므로 정신 건강의 훼손 또는 정신적 기능 장애도 상해가 될 수 있음
- 일시적 불안·스트레스 미포함**
 일시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가해행위에 대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그 자체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음
- 의학적 소견 필요**
 신체의 건강 훼손, 사람의 생리적 기능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의사의 진단서를 주요 근거로 삼아 이루어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해사고 보상 범위

- 보육교직원 상해 담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공제에 가입한 경우,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90%를 2,000만원 한도에서 보상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육활동 중 영유아의 피해를 주장하며 학부모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되어 이에 따른 정신적 치료 및 심리상담을 기소 전 100만원, 기소 후 200만원, 사고당 300만원, 1회당 10만원 한도에서 보상



3 협박

개념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법적근거 : 형법 제283조(협박)

○ 협박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input type="checkbox"/>
해를 끼치겠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의 위협을 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 폭언의 경우, 단순한 욕설을 넘어 보육교사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이 포함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

○ 협박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정심시간에 식사를 거부하는 원아가 있어 식판을 정리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호자가 찾아와서는 교사를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고, 아는 지인을 통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 현장사례 재구성

예시

- 보육교직원에게 공포심을 줄 목적으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통고하는 것
-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거나,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을 올려 보육교사 일을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 아이 아버지가 찾아와 다짜고짜 ‘그만두게 하겠다’, ‘신고해서 책임지게 하겠다’, ‘인터넷에 다 퍼뜨리겠다’ 라고 해서 실제 두려움을 느낀 경우

판례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장래의 해악을 고지하여 일반인이자라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음. 따라서 협박죄의 기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보다는 행위 자체의 객관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참고: 협박죄 처벌 관련

「형법」에 따른 협박죄 처벌

- 「형법」 제283조(협박)
 -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타인을 협박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4

명예훼손·모욕

개념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법적근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게)	<input type="checkbox"/>
특정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글로 적었거나 전달	<input type="checkbox"/>

모욕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게)	<input type="checkbox"/>
특정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비난, 비하, 무시, 경멸적 표현을 언어적, 비언어적, 시각적으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명예훼손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한 재원생 학부모가 보육교사의 근무상황을 외부인을 통해 파악한 후 정확하지 않은 허위 정보를 다른 보호자들에게 유포해서 담임교사가 다른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게 되어 많이 힘들어했어요."

* 현장사례 재구성

예시

- 다른 부모들에게 ‘OOO교사가 전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어서 해고를 당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 학부모들 모임에서 ‘OOO교사 인스타그램 보니까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교사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말을 한 경우

모욕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재원생 아버님께서 사전 연락도 없이 평소 하원시간보다 1시간 일찍 데리러 오셨는데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아이 하원 준비를 해서 데리고 나왔더니 아이가 늦게 나왔다며 화를 내시며 다른 보호자들 앞에서 교사에게 XXX이라고 욕을 하셨어요.”

* 현장사례 재구성

예시

- 원장 및 다른 보육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메신저 프로필이 교사답지 못해요”라고 말하여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 다른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사에게 “선생님 보조교사죠.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은 있으세요?”라고 묻는 경우

판례

-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 다만 그것이 공익과 관련된 사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말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음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515 판결 참조]

-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감정이 담긴 추상적 표현 또는 경미한 수준의 표현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할 만큼 심대한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2.8.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참조]



참고: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처벌 관련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처벌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 따른 모욕죄 처벌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업무방해

개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보육교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

법적근거 : 제314조(업무방해)

●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보육교직원이 적법하게 보육업무를 수행	<input type="checkbox"/>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해서	<input type="checkbox"/>
업무의 방해	<input type="checkbox"/>

● 업무방해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퇴소한 원아가 어린이집 외부에서 다른 원아를 때린 상황이 발생했어요. 피해 원아 보호자는 어린이집 내부에서도 폭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CCTV 열람을 요청하고,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온갖 민원을 반복적으로 넣으며 업무를 방해했어요. CCTV확인 결과, 어린이집 내부에서 폭행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두 원아 모두 퇴소하고 담당교사도 퇴사했어요."

"원아가 어린이집 내에서 다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습 차례 전화 및 OO노트 등으로 지속적인 업무방해를 하였으며, 교사들이 힘들어하여 사직서를 내려고 했어요."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어린이집에서 애를 어떻게 봤길래 감기에 걸렸냐며 갑자기 어린이집에 공무원과 함께 와서 아이들을 보던 담임선생님 내려오라고 큰 목소리로 반복적으로 소리쳐서 어쩔 수 없이 보조선생님을 교실로 급하게 보내고 선생님이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CCTV를 열라는 거예요."

* 현장사례 재구성

예시

- 보호자가 보육활동 중인 보육실로 들어와 큰소리를 지르며 허위사실을 말하고 교사를 밀쳐서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보호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구청, 시청 등에 반복적으로 허위민원을 제기하여 어린이집에서 이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로 과도한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여 원래 수행해야 할 보육활동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판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 등 간접적 압박도 포함됨. 그러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면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참고: 업무방해죄 처벌 관련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죄 처벌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손괴

개념

어린이집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법적근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손괴죄 성립요건

요건	확인
보육교직원 또는 어린이집 소유의	<input type="checkbox"/>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input type="checkbox"/>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손괴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아동학대를 의심한 자원생 보호자가 무단으로 어린이집에 출입하여 교사를 폭행하고 어린이집 내 짐을 파손했어요. 이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대다수가 퇴사하게 되었어요."

* 현장사례 재구성

예시

- 어린이집에서 자녀의 행동에 화가 난 부모가 교사와의 면담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책상과 의자를 파손하는 경우
- 어린이집 놀이기구를 부수는 등 고의로 어린이집 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

판례

건조물 벽면에 낙서하거나 계란 등 오물 등을 투척한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효용 침해 여부는 용도, 미관, 이용자의 불쾌감, 복구 난이도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7

성폭력 범죄

개념 강제추행, 강간, 공중 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등 행위
 법적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성폭력 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립요건

요건	확인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input type="checkbox"/>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input type="checkbox"/>
그 사람(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input type="checkbox"/>
촬영	<input type="checkbox"/>

● 성폭력 범죄 예시 및 판례

예시

- 보육교사를 허락 없이 등 뒤에서 근접 촬영하거나, 앉은 자세나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확대 촬영해 단독방에 공유하는 경우
- 보육교사의 얼굴이나 몸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두고 성적 언급이나 평가를 하는 경우
- 촬영본 아니라 해당 영상을 전송, 유포, 보관하는 경우
- 보육교사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보육교직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

판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함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8

성희롱

개념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희롱 성립요건

요건	확인
보육교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input type="checkbox"/>
성적언동으로 인해	<input type="checkbox"/>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input type="checkbox"/>

● 성희롱 예시 및 판례

예시

- 보호자가 보육교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여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 불필요하게 신체에 접촉하거나 동의 없이 안마를 하며 쓰다듬거나, 스킨십을 하려는 시도를 함
- 음란한 농담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 교사의 사생활(연애, 결혼 등)에 대해 성적 맥락의 질문이나 언급을 지속함

판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9

불법정보유통 행위

개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육교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육교직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불법정보유통 행위(명예훼손)

요건	확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통하여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input type="checkbox"/>
공공연하게	<input type="checkbox"/>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input type="checkbox"/>
명예를 훼손	<input type="checkbox"/>

● 불법정보유통 행위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저는 작년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어요. 혼자 아이가 뛰다 넘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나 제가 배식 중이라 다른 교사가 아이를 안아주었음에도 담임이 아이를 안아주지 않아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고소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부모는 아동학대로 결론지어 ○○지역카페, 국민청원 등을 통해 여론몰이를 했고, 결국 5개월만에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저는 이미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어 사실과 관계없이 아동학대 교사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 현장사례 재구성

예시

- 카카오톡, 메신저, 인터넷 카페에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글을 올리는 경우
- 인터넷 맘카페에 ‘OOO 어린이집 OO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경우
- 보육교사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 보육교사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 음란물 유포에 해당함

판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 관한 사실을 게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그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진실성 증명이 없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으며,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댓글을 단 이상, 비방의 목적이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참고: 불법정보 관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형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유통 처벌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판단 기준

- **반복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에 따른 위반 여부는 반복성에 의해 결정됨. 즉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을 전화 · 이메일 · SNS 등을 통해 1회성으로 발송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 여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동일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8310 판결 참조



10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녹음·배포 행위

개념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보육활동 무단 촬영·녹음·배포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11년차 어린이집 교사인 임모씨는 "최근 옆 반 학부모 중 한 명이 아이 치마에 죽어리를 달아서 녹음기를 들려 보냈다"며 "당황한 교사가 학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학부모 상담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출처: 뉴시스 "요새 세상이 험해서"... 어린이집 '녹음기 등원' 논란 (2023.6.13)

예시

- 보육교사 모르게 녹음기를 이용하여 보육교사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불법 녹음한 것을 무단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
-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사의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이를 단체 채팅방 또는 맘카페에 게시하는 행위

판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몰래 녹음한 사건은 교실에서의 교사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제3자(학부모)가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 없음으로 판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참고: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1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개념 보호자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반복적 민원제기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중 진행되는 실외활동으로 아이의 피부에 발진이 생겼다고 억지를 부리며, 아이의 실외활동을 거부하고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지자체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결국 무릎 꿇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 현장사례 재구성

예시

- 보호자가 개인적인 불만으로 어린이집이나 관할 관청에 매일 반복적으로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민원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관할구청과 그 외 모든 기관에 민원을 넣는 경우

12

부당업무 강요 행위

개념 보육교직원의 법적 의무나 직무범위가 아닌 일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부당업무 강요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A 아이의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에게만 보리차를 매일 끓여서 식힌 후 따로 먹여달라고 요청했어요. 매일 시간 맞춰 물을 끓이고 식히느라 다른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도 없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 원장님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아이 등원 때 매일 여러 벌의 옷을 보내면서 낮잠 시간, 바깥놀이 시간 등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옷으로 바껴어 입혀달라고 요구했어요."

"보호자가 자기 자녀는 무릎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니 선생님 무릎에 꼭 앉혀서 수업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 등원 때 택시를 타고 왔다고 전화하시며 어린이집 현관이 아닌 거리가 떨어진 택시 하차한 곳까지 아이를 데려와 달라고 했어요."

* 현장사례 재구성

예시

- 보호자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하루 일과를 시간마다 사진으로 찍어서 부모에게 전송해달라고 하는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경우
- 보호자가 어린이집 반 배정과 관련하여 특정한 원아를 빼고 원하는 아이들로만 구성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
- 보호자가 자녀의 취향에 맞는 급식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더니 자녀가 먹을 밀키트를 주며 우리 아이에게만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경우

13

보육활동 부당간섭 행위

개념 정당한 보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보육활동 부당간섭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저는 만 3세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보육과정이 놀이중심으로 바뀌면서 "너무 놀고만 있는 것 아니냐,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힘들어요."

"어린이집 물놀이 행사 때, 한 보호자가 자신의 아이는 감기에 걸리면 안 되니 물놀이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여, 어린이집에서 계획된 활동이고 다른 아이들은 물놀이 참여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해당 보호자의 아이는 조금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조심히 지도하겠다고 말씀드니 매우 격양되어 "내 아이 감기 걸리면 선생님이 하루 종일 아이 봐줄거냐" 라고 소리치고, 물놀이 행사 취소하라며 계속 항의하시니 이 직업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더라고요."

* 현장사례 재구성

예시

- 자녀의 개인적인 이유로 체험활동 등 각종 보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 자녀가 물놀이를 싫어한다며 보육활동에 계획된 물놀이와 수영장 현장학습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글씨를 왜 안 가르쳐 주냐, 중국어도 배우게 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는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

개념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보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사례 및 예시

현장 사례

"저희 반에 A 친구가 B 친구를 때리는 일이 생겨, 다툼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활지도를 한 후, A 아이의 보호자에게 사실을 전달드렸더니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안다며 절대 다른 아이를 때리는 아이가 아니라고 하며 현관 앞에서 삿대질하며 큰소리를 쳤어요."

* 현장사례 재구성

예시

-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활동에 따라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는데 이에 협조하지 않고 보육교직원에게 폭언, 협박, 폭행 등을 하는 경우
-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시행한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보호자가 해당 교사에게 폭언·항의·협박을 하는 경우
- 아이가 규칙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지도했는데, 이를 '교사가 아이를 괴롭힌다'는 식으로 왜곡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III

보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

- 1. 원만한 대응 :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 선택 38
- 2. 원칙적 대응 : 공식적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 선택 44
- 3.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통한 보육활동 보호 심의 절차 53
- 4.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장-교사-부모의 역할 58

「영유아보육법」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제5의2호)를 포함한 어린이집의 주요 운영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01 원만한 대응 :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 선택

원만한 대응 로드맵



피해 교직원은 대응 절차의 각 단계별로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계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보육활동 침해 발생

2 보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점검*
* 보육활동 침해 행위 정의 근거

3 원장에게 보고

4 운영위원회 안전 상정 의사 없음 전달

5 보육활동 침해 행위 중단 요청*
* 보육활동 침해 가해자에게 직접

6 원장에게 원만한 해결 위한 중재 요청

7 외부기관* 연계 심리·정서 지원
*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답돌 등

8 대응 종결

원장이 해야 할 일

- 체크리스트 활용 운영위원회 안전 상정 여부 결정
- 3개 항목 중 1개라도 '예'
- 피해교직원 의사 확인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안전 상정 준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안전 상정 여부 체크리스트

- 동일 보호자의 민원 또는 유사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예 아니오
- 피해 교직원이 공식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으나, 어린이집 차원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 아니오
- 사건이 향후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대응 근거와 정당성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예 아니오

원장이 해야 할 일

- 원만한 해결 위한 중재 조치 실행
- 체크리스트 활용 운영위원회 보고 여부 결정
- 4개 항목 중 1개라도 '예'
- 피해교직원 의사 확인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고 준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고 여부 체크리스트

- 다른 교직원도 유사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고,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사건이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 피해 교직원이 심리상담, 휴식, 분리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원하고 있다.
- 기관장의 단독 판단이 부당스럽거나 객관적 근거 보존이 필요하다.

☑ 단계별 대응 절차 안내

① 보육활동 침해 발생

- 교직원 본인이 보육활동 중 보호자의 언행 또는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 위협감, 업무 방해 등을 느꼈다면, 침해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기억하고 정리함

② 보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점검

- 해당 상황이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의 보육활동 침해 행위 중 어느 유형에 부합하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함

* || 장. 보육활동 침해 유형 참조

보육활동 침해 유형

- | | | |
|------------------------------------|--|---|
| <input type="checkbox"/> 무고 | <input type="checkbox"/> 손괴 | <input type="checkbox"/>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
| <input type="checkbox"/> 상해와 폭행 |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범죄 | <input type="checkbox"/> 부당업무 강요 행위 |
| <input type="checkbox"/> 협박 |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부당간섭 행위 |
| <input type="checkbox"/> 명예훼손 및 모욕 |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유통 행위 |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 |
| <input type="checkbox"/> 업무방해 |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 및 녹음, 배포행위 | |

③ 원장에게 보고

- [1차 구두 보고] 침해 상황 발생 직후, 1차적으로 원장에게 상황을 신속하게 구두로 알림



“000 부모님께서 방금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을 반복해서 하였고, 제가 아이의 발달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자 ‘그런 얘긴 필요 없다’며 말을 끊으셨습니다.”

- [2차 서면 보고] 객관성 확보와 추후 있을 수 있는 공식 대응의 근거 마련을 위해 사실 관계*를 상세하게 정리한 서면 보고서를 추후 제출(서식1.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 사건 경위, 언행의 구체적 표현, 교직원의 심리 상태 등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안전 상정 의사 없음 전달

- 피해 교직원이 사건을 공식화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원칙적 대응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장에게 이를 명확히 전달함



“이번 일은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⑤ 보육활동 침해 행위 중단 요청

- 피해 교직원이 직접 보호자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정중하고 명확한 언어로 보육활동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함



“부모님, 지난 면담 중 사용하신 표현으로 인해 저는 불쾌함과 당혹감을 느꼈고,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언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일전에 과음을 하시고 OO를 데리러 오셨을 때, 제게 XXX라고 욕을 하시고 고성을 지르셨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언행으로 저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언행을 삼가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⑥ 원장에게 원만한 해결 위한 중재 요청

- 단독 대응이 어려울 경우, 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함

* 분리 조치, 공식 사과 요청 등



“원장님, 000 부모님에게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원장님께서 대신 중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000 부모님을 직접 만나셔서, 해당 언행이 보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 저의 감정도 함께 전달해 주시며, 재발 방지를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⑦ 외부기관 연계 심리·정서 지원

- 사건 이후 지속되는 스트레스나 감정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외부 심리·정서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음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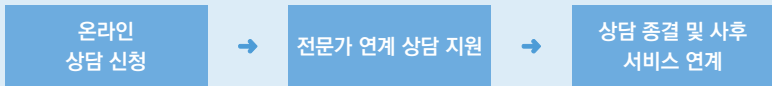
•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이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호자로 인해 발생한 보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가 연계 맞춤 상담 및 지원

[보육활동보호센터 상담 절차]

- 보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기본적인 대응절차 안내와 함께 법률, 심리, 보육현장 전문가를 연계한 상담 지원 및 사후 서비스 제공

※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홈페이지(www.dampool.com)에서 상담 실시



● 한국보육진흥원 ‘마음성장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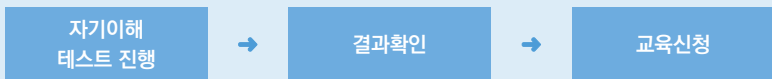
• 마음성장 프로젝트란?

보육교직원이 일상과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 스스로의 마음상태를 점검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자기이해 테스트]

- 보육교직원으로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추천을 위한 검사(총 40문항)

※ 마음성장 프로젝트 홈페이지(mindup.kcpi.or.kr)에서 검사 실시



● 한국보육진흥원 '마음UP 검사'



• 마음UP 검사란?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마음상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직무 특성을 반영해 개발된 맞춤형 심리건강 검사

[마음UP 검사]

- 본인의 강점 및 취약점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검사(총 128문항)

※ 마음UP 홈페이지(www.kcpi.or.kr/mind4u)에서 검사 실시

검사진행
(총 128문항)



결과확인
(해석영상 및 결과지 제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자기회복 및 힐링프로그램)

< 마음UP 검사 문항 구성 >

대영역 (문항수)	하위영역(문항수)	대영역 (문항수)	하위영역(문항수)
직무환경(46)	조직풍토(7)	성격(19)	성실성(3)
	직무자율성(6)		친화성(3)
	직무 스트레스(20)		낙관성(3)
	이직의도(8)		편집성(3)
	직무소진(5)		회피성(3)
			공격성(4)
조직화(19)	주의집중 문제(4)	심리적 웰빙(16)	심리적 안녕감(3)
	실행 기능 곤란(15)		불안/우울(6)
			신체화(7)
스트레스 대응전략(15)	인지적 유연성(6)	대영역(문항수)	방어성(13)
	대처능력(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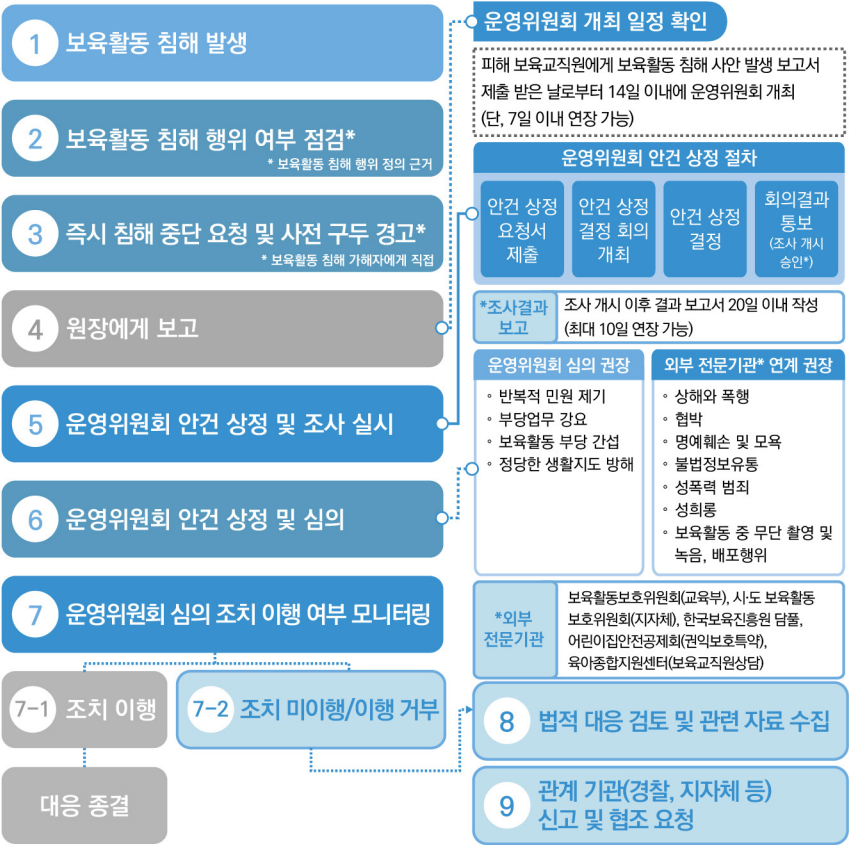
‘불법정보유통 행위’ 발생 시, 원만한 대응 위한 단계별 상호작용 예시		
1단계	보육활동 침해 발생	보호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사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 글을 게시함
2단계	보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점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보육활동 침해 유형 중 ‘불법정보유통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3단계	원장에게 보고	[구두 보고] “원장님, ○○어머님께서 학부모 단톡방과 SNS에 제 실명을 언급하며 ‘○○교사가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게시글을 작성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끼고 있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서면 보고] “객관성 확보와 추후 있을 수 있는 공식 대응의 근거 마련을 위해 사실 관계를 상세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단계	운영위원회 안전 상정 의사 없음 전달	“이번 건은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원만한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5단계	보육활동 침해 행위 중단 요청	“○○어머님, 현재 게시하신 글의 일부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유되지 않도록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단계	원장에게 원만한 해결 위한 중재 요청	“저는 ○○어머님에게 직접 재차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장님께서 ○○어머님에게 사실관계 정리와 유감 표현 및 재발 방지 요청을 대신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단계	외부기관 연계 심리·정서 지원	“000 어린이집에 재직하는 보육교사 000입니다. 얼마 전 부모님의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현재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마음UP’ 검사와 심리·정서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8단계	대응 종결	“보호자 측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하여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02 원칙적 대응 : 공식적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 선택

원칙적 대응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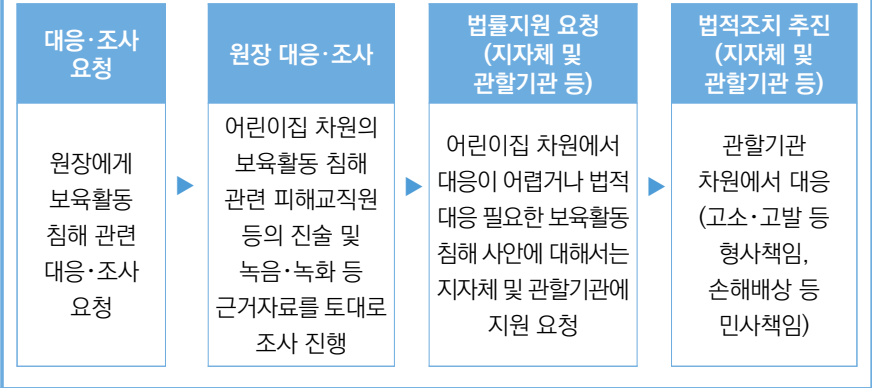
피해 교직원은 대응 절차의 각 단계별로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계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일부 보호자 등의 보육활동 침해에 의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등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에 해당할 경우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서 고발 조치 가능

〈지자체 및 관할기관 지원 절차〉



☑ 단계별 대응 절차 안내

① 보육활동 침해 발생

- 교직원 본인이 보육활동 중 보호자의 언행 또는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 위협감, 업무 방해 등을 느꼈다면, 침해 상황이 발생한 것임
-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기억하고 정리함

② 보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점검

- 해당 상황이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의 보육활동 침해 행위 중 어느 유형에 부합하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함

* || 장. 보육활동 침해 유형 참조

보육활동 침해 유형

- | | | |
|------------------------------------|--|---|
| <input type="checkbox"/> 무고 | <input type="checkbox"/> 손괴 | <input type="checkbox"/>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
| <input type="checkbox"/> 상해와 폭행 |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범죄 | <input type="checkbox"/> 부당업무 강요 행위 |
| <input type="checkbox"/> 협박 |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부당간섭 행위 |
| <input type="checkbox"/> 명예훼손 및 모욕 |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유통 행위 |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 |
| <input type="checkbox"/> 업무방해 |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 및 녹음, 배포행위 | |

③ 즉시 침해 중단 요청 및 사전 구두 경고

- 보육활동 침해 상황 발생 즉시 당사자인 보호자에게 단호한 어조로, 현재 보호자의 행동이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됨을 고지하고 해당 행위를 삼가 주실 것을 요청함



“부모님, 지금 사용하신 표현은 저에게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씀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육활동 침해 상황 발생 즉시 현재 보호자의 행동이 영유아보육법의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고지
-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필요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알림
- 추후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녹화(녹음)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



“부모님의 지금 언행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즉시 중단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만일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녹화나 녹음 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활동 침해 상황 발생 즉시 보호자에게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기기를 이용하여 녹화(녹음)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하고, 바로 녹화(녹음) 실시



“부모님의 지금 언행으로 저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명확하게 모욕죄에 해당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사실 확인을 위해, 지금부터 진행되는 모든 대화는 스마트폰으로 녹화(녹음)될 예정입니다.”

④ 원장에게 보고

- [1차 구두 보고] 침해 상황 발생 직후, 1차적으로 원장에게 상황을 신속하게 구두로 알림



“000 부모님께서 방금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을 반복해서 하셨고, 제가 아이의 발달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자 ‘그런 애긴 필요 없다’며 말을 끊으셨습니다.”

- [1차 구두 보고] 해당 보육활동 침해 건에 대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함



“원장님, 부모님께서 제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시고,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일전에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자체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으나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집중이 어려울 정도로 정서적 불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 [2차 서면 보고] 객관성 확보와 추후 있을 수 있는 공식 대응의 근거 마련을 위해 사실 관계*를 상세하게 정리한 서면 보고서를 추후 제출(서식1.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 사건 경위, 언행의 구체적 표현, 교직원의 심리 상태 등

※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희망하는 경우 피해 보육교직원으로부터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것을 권장함 (7일 이내 연장 가능)

⑤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조사 실시

- 원장이 사건의 경중, 피해 교직원의 의사, 유사 사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필요성 판단
-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건 상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제출함(서식3.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서)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식 조사를 개시함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침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사안 조사를 실시하여 기록함(서식2. 보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⑥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보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 내용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함(서식3.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서)
- 운영위원회 개최 전, 위원 및 피해 보육교직원, 가해 보호자 등 관련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하며, 불참할 경우 서면을 통해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서식4~6. 서면진술서)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침해 행위의 경중, 피해 교직원의 진술,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침해가해자에 대한 권고사항(예: 구두 경고, 공식 사과 요청, 접촉 제한 등) 및 피해 교직원 보호조치(예: 심리상담 연계 등)를 결정함

(서식9.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 결과의 근거 및 공정성 확보
(서식8.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회의록)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결과를 침해 가해자 및 피해 보육교직원에게 통지함
(서식11~12.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⑦ 운영위원회 심의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피해 교직원에게 확인함



“000 부모님께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통보한 이후 전혀 연락이 없었고, 구두 사과도 전달받아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저는 조치가 충분히 이행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⑧ 법적 대응 검토 및 관련 자료 수집

- 보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함
- 법적 대응 여부는 원장과 피해 교직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한국보육진흥원 담풍, 법률 자문기관 등)의 상담을 병행할 수 있음
- 법적 대응을 결정한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함
* 서면 보고서, 녹취 파일, 문자/카톡 캡처, 목격자 진술 등
-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육활동 침해 가해자에게 고지하고 녹화(녹음) 실시



“부모님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여 바로 녹화(녹음)를 진행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형법 제21조에 의거, 부모님께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화(녹음)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이버상에 올린 게시글 등은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화면캡처, 촬영 등을 통해 확보하겠습니다.”

※ 녹음·녹화 시 주의사항

- 사전 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민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사전에 녹화(녹음)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해야 함
- 사전 고지 후 동영상 촬영이라도 상대방의 얼굴이 들어가는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얼굴 정면이 들어가지 않도록 촬영 필요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대화 당사자 중 1인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며, 형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대화 내용에 대한 녹화(녹음) 시도 필요
- ※ 법적 대응을 위해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기록으로 남길 경우,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됨. 예를 들어 보육활동 침해 행위 중 폭행이 발생했다면, 폭행 가해자(who), 폭행 시간(when), 폭행 장소(when), 폭행 내용(what), 폭행 발생원인(why), 폭행 사건 발생 이후 경과(how) 등을 정확히 기재해 두면 추후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

⑨ 관계 기관(경찰) 신고 및 협조 요청

- 상황이 지속되거나 중대할 경우, 관계 기관(경찰)에 신고*하고 협조를 요청함
 - * 112(긴급신고) 혹은 110(비긴급 신고)으로 신고전화
- 경찰에게 보육교사가 경험한 보육활동 침해 상황을 가감 없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적 조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거자료, 신고 이후의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교사입니다. 지난 ○월 ○일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상담 중에 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직접적인 상해는 없었으나,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일상생활 및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참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 권익보호 특약 보상 손해의 범위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아동’에게 발생한 사고로 선생님들이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신고됨으로써, 형사절차(경찰·검찰 수사, 재판 등)가 개시될 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장

[보장한도]

→ (경찰/검찰에서 수사하는 단계)

변호사선임비용 : 1인당 500만원까지 실비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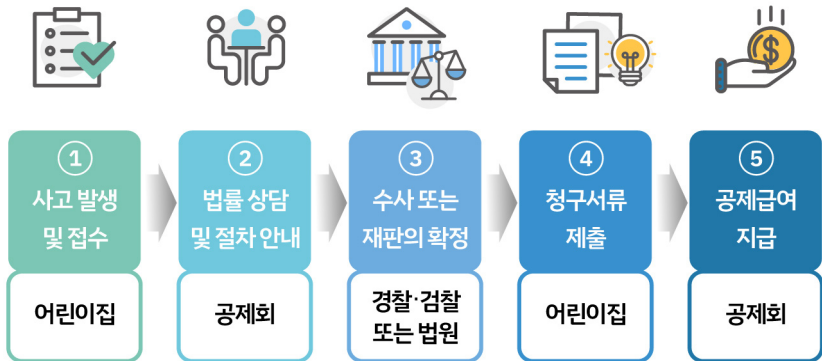
심리지원비용 : 1인당 100만원까지 실비 보상(1회 10만원 한도)

→ (경찰/검찰 조사 이후 법원에서 재판하는 단계)

변호사선임비용 : 1인당 1심/2심/3심 재판 각 500만원까지 실비 보상

심리지원비용 : 1인당 200만원까지 실비 보상(1회당 10만원 한도)

-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범위
 -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고의사고로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 측과 형사적으로 합의할 경우 형사합의금 보상대상 제외
- 보상 업무 절차



‘불법정보유통 행위’ 발생 시, 원칙적 대응 위한 단계별 상호작용 예시		
1단계	보육활동 침해 발생	보호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사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 글을 게시함
2단계	보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점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보육활동 침해 유형 중 ‘불법정보유통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3단계	즉시 침해 중단 요청 및 사전 구두 경고	“부모님께서 게시한 글은 사실이 아니며,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즉시 삭제해 주시고, 향후 반복 시 운영위원회 상정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단계	원장에게 보고	[구두 보고] “원장님, ○○어머님께서 학부모 단톡방과 SNS에 제 실명을 언급하며 ‘○○교사가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게시글을 작성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끼고 있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드립니다. 정식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고 싶습니다.” [서면 보고] “객관성 확보와 추후 있을 수 있는 공식 대응의 근거 마련을 위해 사실 관계를 상세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단계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조사 실시	원장이 경중, 피해자 의사 고려 후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의결을 요청하며, 승인 시 정식 조사 후 보고서 작성
6단계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피해 교직원 진술 요청 시] “게시물의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고, 제가 경험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매우 컸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단계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원장 또는 운영위원회 담당자가 게시글 삭제, 공식 사과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불이행 시 재상정 및 법적 검토 실시
8단계	법적 대응 검토 및 관련 자료 수집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이버 상에 올린 글 등은 명백하게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현재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경찰 신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9단계	관계 기관 신고 및 협조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입니다. 특정 보호자분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고 있어 명예훼손에 대한 상담 및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03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통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심의 절차



※ 원내 업무 담당자 지정

• 원내 업무 담당자 지정이란?

교육부의 「제1차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르면,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위원(교사) 또는 어린이집 원장 등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맞게 원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함

• 원내 담당자의 역할은?

- 보육활동 침해 사안의 인지 즉시, 보육활동 안정화를 위한 침해 행위자(보호자)와 피해 보육교직원을 즉시 분리조치 및 당사자 면담 실시

※ 분리조치 시 피해 보육교직원의 의사 확인 필요

- 응급상황 시 보건교사 또는 다른 교사와 협력하여 응급처치, 병원 후송 등 조치 후, 업무 대행자 지정

① 1단계: 운영위원회 구성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되,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기준을 적용함

- 원장, 교사 대표, 부모 대표, 외부 인사 등 총 5~10인으로 구성
- 특정 집단이 1/3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외부 인사에는 필요시 변호사, 아동보호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음

② 2단계: 회의 소집

● 회의는 다음의 방식으로 소집될 수 있음

- 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
- 피해 보육교직원의 요청
- 위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요청

● 회의 개최 최소 10일 전까지 운영위원 및 이해 당사자(피해 교직원, 침해 행위자)에게 출석 요청서 및 안건 설명 자료* 배포

* 이해 당사자에게는 출석 요청서와 함께 요약된 사건 개요 또는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내용만을 제한적으로 제공

● 단, '보육교직원 보호 및 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이 지체 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긴급 상황*으로 인정될 경우, 위원 과반 동의를 전제로 최소 3일 전까지 안건 자료를 송부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긴급상황

<input type="checkbox"/> 즉각적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침해 행위가 반복되거나 강도가 높아져 피해 교직원의 정신적/신체적 위협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조치 없이 현장 안정화가 불가능한 경우	대응이 미뤄질 경우 보육환경의 심각한 갈등 또는 운영 차질이 우려될 때
<input type="checkbox"/> 외부 신고(경찰)가 이미 접수된 경우	기관 내부 절차를 신속히 갖추어야 대외적 대응의 정당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③ 3단계: 심의¹⁾

(1) 개회 선언 및 자격 확인

-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위원 참석 인원을 확인함

*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필요시,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 여부 확인

※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에서 배제되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위원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안내

(2) 심의 절차 개시

- 안건에 대한 성립 여부 확인 및 회의 목적 공표
- 안건 개요, 보고 경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서면 및 구두로 공유함

(3) 대상자 안내 및 진술

- 피해 교직원의 진술 기회 보장, 원할 경우 서면 진술로 대체 가능
- 침해 행위자로 지목된 보호자의 반론 진술 기회 보장

(4)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 필요시, 변호사, 상담 전문가, 외부 보호위원*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 고충상담 담당자,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위원 등 전문적 견해를 제공할 수 있는 권위자

(5) 판단 및 권고

- 보육활동 침해 여부, 사실관계 인정 범위,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 또는 조치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1) 심의 세부 절차는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 안건 상정 → 위원 대상 제척·회피 안내 → 조사결과 보고 → 피해 교직원 진술 청취 → 침해 행위자 진술 청취 →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 침해 행위 여부 심의 →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권고사항 심의 → 폐회 순으로 이루어짐

- 침해 행위자에 대한 권고사항: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피해 교직원에 대한 접촉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촉 포함) 금지 혹은 제한, 보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 이수 등
- 피해 교직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그 밖에 회복에 필요한 조치(업무일시 중단, 보직 변경, 법률상담 연계 등)

④ 4단계: 심의 결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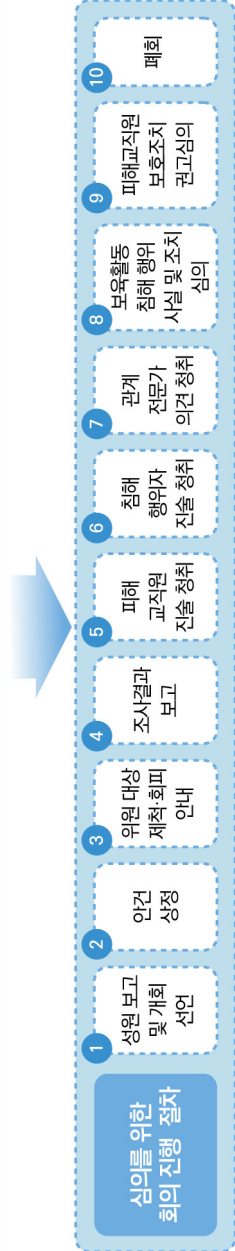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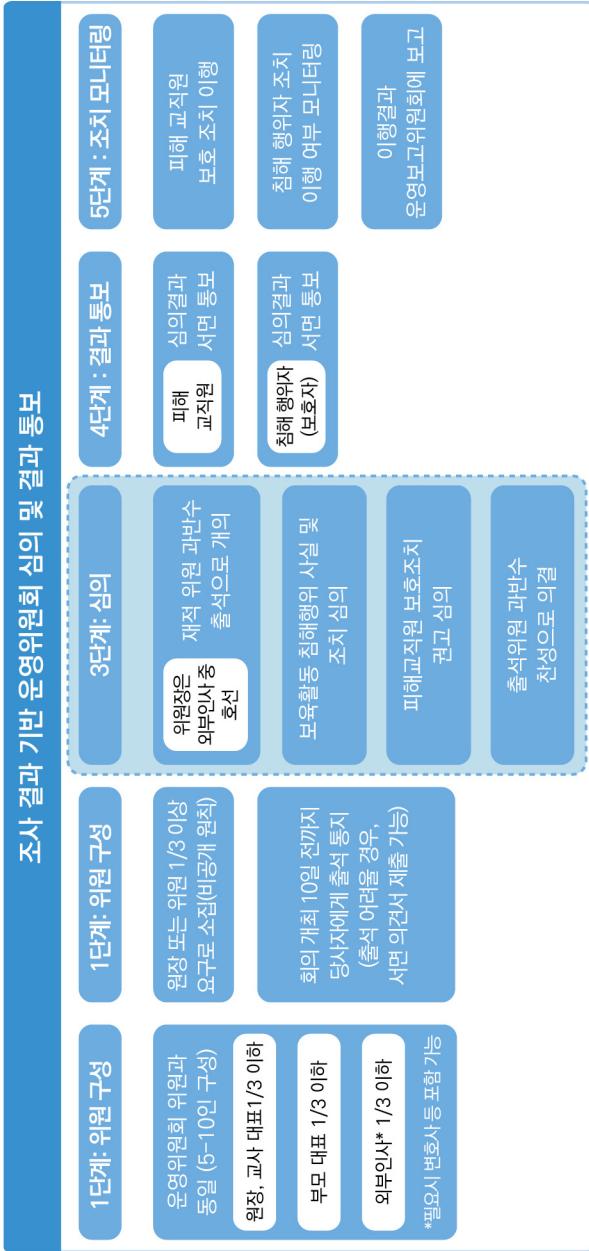
● 다음과 같이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함

- 피해 교직원에게: 보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및 피해 교직원 보호조치, 침해 행위자 권고사항(조치)
- 침해 행위자에게: 보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및 침해 행위자 권고사항(조치)

● 심의 결과 통보 시에는 해당 사건의 개요, 위원회 판단 및 조치 결정의 주요 이유 등의 안내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함

⑤ 5단계: 조치 이행 모니터링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사항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함
- 피해 교직원이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느끼는지를 중심으로 판단
- 불이행, 거부, 불성실 이행 등의 경우 법적 대응 검토 및 보고 재상정 가능
- 이행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정식 보고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함



04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장-교사-부모의 역할



- 보육활동 보호는 어린이집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받고 부모와의 상호 신뢰가 형성될 때 영유아는 더욱 안정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
- 보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원장, 보육교사, 부모가 함께 실천해야 할 주요 역할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원장의 역할

☑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

- 보육교사가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지원함
-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놀이중심 보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함
- 보육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활동과 권리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어린이집 내 보육활동 보호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구성원이 이를 숙지하도록 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부모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정기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함
- 영유아 및 보호자와 교사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행정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함

☑ 침해 발생 시 역할

- 보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방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며, 관리책임자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보육교사의 입장을 존중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이행해야 함
- 침해 상황이 반복되거나 원만한 조정이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침해 상황 처리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의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함
- 사건 처리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 보육교사 모두에게 관련 규정과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함

보육교사의 역할

☑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

- 보육전문가로서 책무를 다하며, 놀이중심 보육과정에 기반한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함
- 부모와 해당 반의 보육과정에 대해 공유하고, 보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함
-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이해하고, 자녀의 발달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가정의 이해를 도움
- 부모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감정적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공감적인 태도로 소통하여 신뢰를 유지함

☑ 침해 발생 시 역할

-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받는 경우, 침착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응하고, 해당 상황이 보육활동 침해에 해당됨을 명확히 알림
- 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문서화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
- 필요시, 관련 법과 기관의 공식적인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함

부모의 역할

☑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

- 어린이집의 보육철학과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이해하고, 보육전문가로서 원장과 보육교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짐
- 자녀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협력하며, 가정에서도 일관성 있는 양육 및 지도를 함
- 가정통신문, 알림장, 면담, 부모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어린이집과 소통하며 보육교사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함
- 보육교사의 업무시간과 사생활을 존중하며,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연락을 자제함
- 자녀 양육의 1차 책임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성실히 하며 어린이집을 신뢰하고 보육교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자녀 발달을 함께 책임짐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하며, 보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

☑ 침해 발생 시 역할

- 자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도록 함
- 갈등이 발생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원장 또는 해당 보육교사와 약속을 정한 뒤 방문하여 대화함
- 자신의 과도한 간섭이나 부당한 요구가 보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함
- 보육교직원이 해당 행위가 보육활동 침해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종단을 요청할 경우, 즉시 행위를 중지하고 원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성실히 임함
- 사이버 공간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육교직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
- 교사와의 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거나, 어린이집에 요청이 있을 때는 원장 또는 공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
- 문제 해결 이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함



IV

부록

● 1. 관련 서식	64
● 2. 유관기관 서비스	78
● 3.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87
● 4.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99
● 5. 보육활동 침해 현황	104

01

관련 서식



서식 안내

- 서식1.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 서식2. 보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 서식3. 어린이집운영위원회(보육활동 침해 사안) 안건 상정 요청서
- 서식4. 서면 진술서(보육교직원용)
- 서식5. 서면 진술서(보호자용)
- 서식6. 서면 진술서(참고인)
- 서식7. 비밀유지 서약서
- 서식8. 어린이집운영위원회(보육활동 침해 사안) 회의록
- 서식9. 어린이집운영위원회(보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결과
- 서식10. 어린이집운영위원회(보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결과 보고서
- 서식11. 어린이집운영위원회(보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결과 통지서
(보호자용)
- 서식12. 어린이집운영위원회(보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결과 통지서
(보육교직원용)

※ 관련 서식은 별첨 파일로 제공되며, 필요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식 1]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피해 교직원	성명		소속	
	연락처		총 보육경력	
	기본정보	□ 여 □ 남		
		□ 담임 □ 연장보육 전담 □ 보조 □ 기타 _____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 만 5세		
침해 행위자	성명		성별	□ 여 □ 남
	연락처			
	관계	□ 세반 ○○○(영유아)의 □ 부모 □ 조부모 □ 친인척 □ 기타		
	기본정보	□ 최초 발생 □ 보육활동 침해 이력 있음(_____ 회)		
사안 내용	발생일시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시 분경		
	발생장소	□ 어린이집 내 □ 온라인 공간 □ 기타 _____		
	침해 상황 개요	- 침해 행위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 발생일시를 시간 순으로 명시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피해 교직원 대응 의사	□ 별도 대응 원치 않음(기록만 보관) □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희망 □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를 희망			
피해 교직원 요청 사항	□ 즉시 분리 희망 □ 즉시 분리를 원하지 않음			
목격자 유무	□ 有 (성명: _____ 관계: _____) □ 無			
위와 같이 보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합니다.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어린이집 원장 귀중				

[서식 2]

보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작성자	소속/직위		
				성명		
피해 교직원	성명			소속		
	연락처			총 보육경력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담임 <input type="checkbox"/> 연장보육 전담 <input type="checkbox"/> 보조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만 0세 <input type="checkbox"/> 만 1세 <input type="checkbox"/> 만 2세 <input type="checkbox"/> 만 3세 <input type="checkbox"/> 만 4세 <input type="checkbox"/> 만 5세			
침해 행위자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남	
	연락처					
	관계	<input type="checkbox"/> 세반 <input type="checkbox"/> 영유아()의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최초 발생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이력 있음(____ 회)				
사안 내용	발생일시	20 년 월 일 시 분경				
	발생장소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내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공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침해 유형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무고 <input type="checkbox"/>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input type="checkbox"/> 손괴 <input type="checkbox"/> 부당업무 강요 행위 <input type="checkbox"/> 상해와 폭행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부당간섭 행위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범죄 <input type="checkbox"/> 명예훼손 및 모욕 <input type="checkbox"/> 협박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유통 행위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 <input type="checkbox"/> 업무방해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 및 녹음, 배포행위				
	침해 상황 개요	- 침해 행위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 발생일시를 시간 순으로 명시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쟁점사안	피해교직원 주장 및 근거	[주장] 근거 <input type="checkbox"/> CCTV 캡처 이미지 <input type="checkbox"/> 녹취록 <input type="checkbox"/> 문자대화 <input type="checkbox"/> 피해교직원 진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침해 행위자 주장 및 근거	[주장]	
		근거	<input type="checkbox"/> CCTV 캡처 이미지 <input type="checkbox"/> 녹취록 <input type="checkbox"/> 문자대화 <input type="checkbox"/> 침해 행위자 진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격자 유무 및 진술	<input type="checkbox"/> 有 (성명 : 관계:)	
		<input type="checkbox"/> 無	[진술내용]
기타 입증자료			
피해 교직원 대응 의사		<input type="checkbox"/> 별도 대응 원치 않음(기록만 보관) <input type="checkbox"/>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희망 <input type="checkbox"/>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를 희망	
기관의 1차 대응 조치	피해 교직원 보호 조치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담임업무 일시 중지 <input type="checkbox"/> 보호자와 접촉 차단 <input type="checkbox"/> 법률상담 연계 <input type="checkbox"/> 심리상담 연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분리 조치 시행 유무	<input type="checkbox"/> 분리	<input type="checkbox"/> 미분리
		분리 방법	미분리 사유
	침해 행위자에 대한 대응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현장 제지 <input type="checkbox"/> 사과 요청 <input type="checkbox"/> 대면면담 진행 <input type="checkbox"/> 전화면담 진행 <input type="checkbox"/> 주의/경고 전달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침해 행위자 반응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반응없음 <input type="checkbox"/> 형식적 사과 <input type="checkbox"/> 진심어린 사과 <input type="checkbox"/> 개선 약속 <input type="checkbox"/> 공격적 반응(고성, 욕설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기타사항			
		작성자	성명 : (서명)
		확인 및 보고자(원장)	성명 : (서명)



[서식 3]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육활동 침해 사안) 안건 상정 요청서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사안번호	○○어린이집 2025-○○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요청자	성명	직위	
	연락처		
안건상정 판단 근거	체크리스트	<input type="checkbox"/> 동일 보호자의 민원 또는 유사 민원이 반복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피해 교직원이 공식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어린이집 차원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사건이 향후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린이집 대응 근거와 정당성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피해 보육교직원의 요청	
상정 요청 내용	사안		
	상정 사유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발생 관련 피해 교직원 보호 조치 필요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필요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관련 자료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보육활동 침해 발생 보고서, 진술서 등) <input type="checkbox"/> 없음	
	첨부자료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발생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피해 교직원 진술서 <input type="checkbox"/> 침해 행위자 진술서 <input type="checkbox"/> 증빙자료(녹취록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일 최소 10일 전(휴일 포함)까지 본 요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제출함			
작성자		성명 :	(서명)
확인 및 보고자(원장)		성명 :	(서명)

[서식 4]

서면 진술서(보육교직원용)

피해 교직원	소속	직위	성명
	○○어린이집		

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보육활동 침해 사실에 대한 의견	
요청 사항	
기타 사항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어린이집 원장 귀중

[서식 5]

서면 진술서(보호자용)

침해 관련자	○세반 ○○○(영유아)와의 관계	성명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보육활동 침해 사실에 대한 의견	
요청 사항	
기타 사항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어린이집 원장 귀중

[서식 6]

서면 진술서(참고인용)

참고인	소속	직위	성명

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보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목격한 사실	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 상황 목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참고인 요청사항	

※ 본인은 위 서면 진술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본 건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어린이집 원장 귀중

[서식 기]

비밀유지 서약서 [운영위원회 위원용]

본인은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사안)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취급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안건, 논의내용, 문서, 제출자료, 발언 내용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3자(보호자, 교사, 외부기관 등)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알게 된 보육활동 침해 관련 사안의 당사자, 참고인, 피해 교직원 등 개인의 신상 및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운영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비공개 사항을 본인의 사적인 목적이나 기타 부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서약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지속됩니다.
5. 본 서약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운영위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8]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육활동 침해 사안) 회의록

■ 사안번호: OO어린이집 2025-OO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장소				
운영위원	위원장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정수: 명	참석 위원: 명	불참 위원: 명		
피해 교직원			<input type="checkbox"/>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침해 행위자			<input type="checkbox"/>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p>※ 회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회 및 성원 보고 2. 안건 상정 3. 위원 대상 제척·기피 사유 확인 4. 사안 조사결과 보고 5. 관련 당사자(피해 교직원 및 침해 행위자) 진술 청취 6.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7. 사안 심의 및 조치 결정 8. 폐회 <p style="text-align: right;">* 필수 절차 아님</p>				
회의내용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함			

[서식 9]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결과

■ 사안번호: OO어린이집 2025-00

피해 교직원	소속	직위	성명

침해 관련자	○세반 ○○○(영유아)와의 관계	성명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육활동 침해 행위 심의 결과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행위임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님	
	<input type="checkbox"/> 무고 <input type="checkbox"/> 손괴 <input type="checkbox"/>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input type="checkbox"/> 상해와 폭행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범죄 <input type="checkbox"/> 부당업무 강요 행위 <input type="checkbox"/> 협박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부당간섭 행위 <input type="checkbox"/> 명예훼손 및 모욕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유통 행위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 <input type="checkbox"/> 업무방해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 및 녹음, 배포행위 ※ 보육활동 침해 행위일 경우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체크 가능)		
침해 행위자 권고사항	<input type="checkbox"/> 피해 교직원과의 관계 회복 위한 사과문 작성 또는 대면사과 권고 <input type="checkbox"/> 향후 동일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이수 권고		표결 찬성○, 반대○
	피해교직원 보호조치	<input type="checkbox"/> 담임업무 일시 중지 <input type="checkbox"/> 보호자와 접촉 차단 <input type="checkbox"/> 법률상담 연계 <input type="checkbox"/> 심리상담 연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20 년 월 일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육활동 침해 사안) 위원장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서식 10]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OO어린이집 2025-OO

피해 교직원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남		총 보육경력
<input type="checkbox"/> 담임 <input type="checkbox"/> 연장보육 전담 <input type="checkbox"/> 보조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만 0세 <input type="checkbox"/> 만 1세 <input type="checkbox"/> 만 2세 <input type="checkbox"/> 만 3세 <input type="checkbox"/> 만 4세 <input type="checkbox"/> 만 5세				
침해 행위자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남
	주소			
	연락처			
사안 내용	발생일시	20 년 월 일 시 분경		
	발생장소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내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공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침해 상황 개요			
보육활동 침해유형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무고	<input type="checkbox"/> 손괴	<input type="checkbox"/>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input type="checkbox"/> 상해와 폭행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범죄	<input type="checkbox"/> 부당업무 강요 행위	
	<input type="checkbox"/> 협박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부당간섭 행위	
	<input type="checkbox"/> 명예훼손 및 모욕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유통 행위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	
	<input type="checkbox"/> 업무방해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 및 녹음, 배포행위		
	운영위원회 개최 일시		20 년 월 일	위원수
조치 사항	구분	성명	조치 결정 사항	
	피해 교직원			
	침해 행위자			
	기타			
조치 사항 통보	20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대면 전달 <input type="checkbox"/> 서면으로 등기우편 발송			
기타사항				
		작성자	성명 :	(서명)
		확인 및 보고자(원장)	성명 :	(서명)



[서식 11]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결과 통지서 [보호자용]

■ 사안번호: ○○어린이집 2025-○○

성명		소속	○○어린이집 ○○반
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행위임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님		
권고사항	<input type="checkbox"/> 피해 교직원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사과문 작성 또는 대면 사과 권고 <input type="checkbox"/> 향후 동일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접촉 금지(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촉 포함)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이수 권고		
이행기한	20 년 월 일		
조치결정 이유	운영위원회 결정 배경 및 판단 사유 간략 기재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보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위 기한 내 성실하게 해당 조치를 이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어린이집 원장 (직인)			

[서식 12]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결과 통지서
[보육교직원용]

■ 사안번호: ○○어린이집 2025-○○

피해 교직원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침해 행위자	성명		소속	○○어린이집 ○○반

심의 결과	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행위임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님	
	침해 행위자 권고사항	<input type="checkbox"/> 피해 교직원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사과문 작성 또는 대면 사과 권고 <input type="checkbox"/> 향후 동일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접촉 금지(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촉 포함) <input type="checkbox"/> 보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이수 권고	
	결정 이유	운영위원회 결정 배경 및 판단 사유 간략 기재	

피해 교직원 보호 권고 조치	<input type="checkbox"/> 담임업무 일시 중지 <input type="checkbox"/> 보호자와 접촉 차단 <input type="checkbox"/> 법률상담 연계 <input type="checkbox"/> 심리상담 연계
-----------------	--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어린이집 원장 (직인)



02

유관기관 서비스



1. 보육활동보호위원회

○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4, 동법 시행령 제20조의9~11」에 근거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 보육활동 침해 행위 및 보호자 조치 기준 법제화('26년) 이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수행

☑ 중앙보육활동보호위원회

○ 중앙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사항[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4, 동법 시행령 제20조의9]

구분	내용
심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 5년 마다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중앙보육활동보호위원회 구성[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0]

구분	내용
위원정수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구성요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
위원장 구성요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

● 중앙보육활동보호위원회 운영[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0]

구분	내용
위원회 소집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족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사항[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4, 동법 시행령 제20조의9]

구분	내용
심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 매년 2월 말일까지 -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구성[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0]

구분	내용
위원정수	<p>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p>
위원 구성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도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영유아 보육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인 보육교직원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분	내용
위원장 구성요건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위원 중 호선(互選)
위원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운영[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1]

구분	내용
위원회 소집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족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2.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한국보육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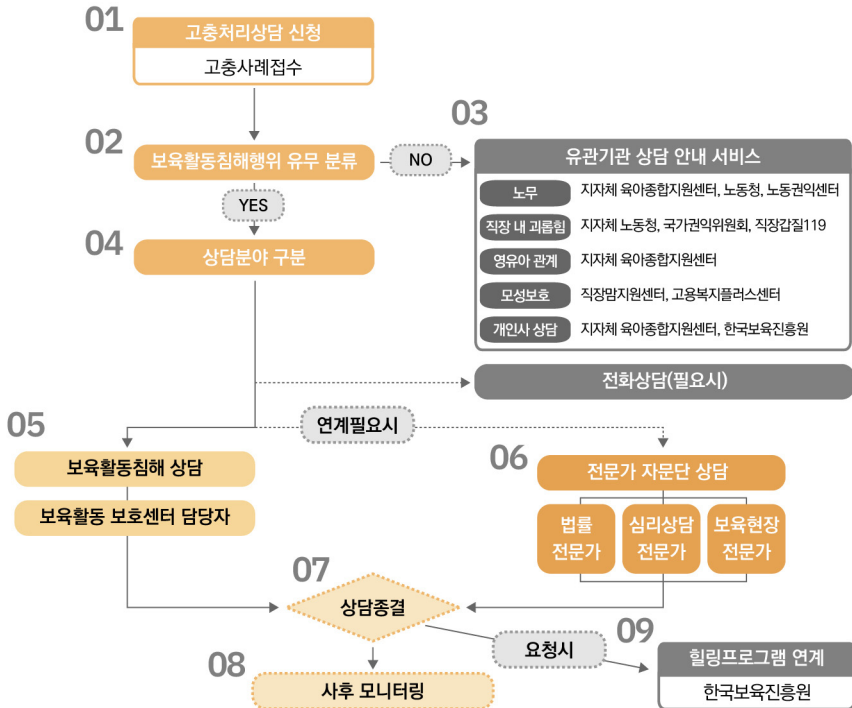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보육교직원의 고충을 귀담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풀어내는 곳을 의미하는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은,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전문적·다각적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보육 활동 수행을 지원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보육활동 보호 지원 기관

☑ 보육활동보호센터 이용안내

구분	내용
이용방법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 지원  <담풀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대상	현직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업무범위	영유아의 보호자*로 인해 발생한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영유아의 학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 포함
주요사업	- 보육활동 침해 관련 온라인 상담 지원 -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 보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 지원 등
상담영역	- 법률: 보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방법 안내 - 심리: 보육활동 침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에 대한 전문 상담 제공 - 보육현장: 보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어린이집 중심의 대응 방법 안내



☑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체계








- 01 보육활동보호센터 상담문의 -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신청
- 02 보육활동보호센터 담당자는 상담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보육활동 침해사안이 아닌 것과 침해사안인 것으로 분류
- 03 보육활동 침해사안이 아닌 경우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04 보육활동 침해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분야 구분
- 05 보육활동보호센터 담당자 상담 제공
- 보육활동 침해처리 대응 절차, 이용 절차에 대한 문 및 경미한 사안으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 06 전문가 자문단 상담 제공
- 신청인이 전문 상담 연계를 동의하고, 보육활동보호센터 담당자가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07 상담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답변 제공
- 08 상담 종료 후 1달 이내 사후 모니터링 진행
- 09 신청인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힐링프로그램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한 경우 관련 정보 제공

☑ 보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자료 안내


●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플 소개 자료

구분	내용	바로가기 QR
보육활동 보호센터 담플 안내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플 안내, 상담 절차, 홈페이지 이용 안내 영상	
	보육활동보호센터 사업 안내 리플릿	

● 보육활동 침해 예방 및 인식 개선 관련 자료

구분	내용	QR 코드
보육교직원 존중 캠페인 (영상)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존중 캠페인 영상 (2025)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존중 캠페인 영상 (2024)	
	어린이집 및 보호자 실천 다짐 안내 영상(2024)	
보육활동 침해 유형 안내 (영상)	영유아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 유형 (부당간섭) 안내 영상 01	
	영유아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 유형 (부당간섭) 안내 영상 02	

● 보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보호자용) 자료

구분	내용	QR 코드
보호자 대상 교육 (영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호자 대상 보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영상	

※ 자세한 사항은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플 홈페이지(www.dampool.com) > '홍보물'에서 확인 가능

3. 기타 유관기관

구분	센터명	사이트 주소	연락처
1	국가인권위원회	case.humanrights.go.kr	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지원내용) -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방안 안내 - 차별 행위(장애, 성별, 나이, 병력 등)로 인한 인권침해 상담 등		
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제도	https://www.acrc.go.kr/ menu.es?mid=a10201010100	국번없이 110
	(지원내용) -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처리 지원		
3	노동권익센터	지역별 상이	지역별 상이
	(지원내용) - 일터에서 겪게 되는 부당한 일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지역별노동권익센터 안내) - 서울(02-6925-4349), 인천(1533-2942), 경기도(031-8030-4541), 대전(042-345-2509), 대구(053-475-7700), 부산(051-852-1500)		
4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sctrights.com	02-772-9813
	(지원내용) -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법률상담, 노무 상담 무료 제공		
5	경기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창구	http://gyeonggi.childcare.go.kr	031-258-1485
	(지원내용) - 보육교직원 대상 노무, 법률, 심리분야 고충상담, 노동인권교육,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경기도 인권센터	https://www.gg.go.kr/ humanrights	031-8008-2340
	(지원내용) - 경기도 소속기관 및 단체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상담 제공 - 인권침해 신청사건 조사(직권조사 개시), 결정 및 시정 권고		

구분	센터명	사이트 주소	연락처
7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상이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유형과 보육교직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 상담프로그램 운영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연계한 상담 지원 (지역별 상담프로그램 안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central.childcare.go.kr (1661-5666) - 서울(02-772-9814~8), 부산(051-866-0536~7), 대구(053-421-2346~7), 인천(032-431-4606~9), 광주(062-714-3636), 대전(042-721-1256~7), 울산(052-266-4173~4), 세종(044-865-0561), 경기(031-238-1485), 경기북부(031-876-5767~8), 강원(033-244-2660,4660,8660), 충북(043-239-8777~8), 충남(041-634-6234~9), 전북(063-276-8080~1), 전남(061-285-5455~6), 경북(054-655-9939), 경남(055-213-2471~5,7), 제주(064-746-2211)		
8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지역별 상이	지역별 상이
	(지원내용) -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심리상담 제공 - 감정노동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센터) - 서울노동포털 https://www.seoullabor.or.kr - 경기도 http://gg-emotion.or.kr (031-263-9985)		
9	직장갑질119	https://gabjil119.co.kr/	-
	(지원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임금 체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및 법률 지원 - 직종별 온라인 모임을 통해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공론화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		
10	직장맘센터	지역별 상이	지역별 상이
	(지원내용) -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직장맘(대디)의 고충해결과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 수행 (지역별센터) - 서울서남권 직장맘센터 02-852-0102, 서울동부권 직장맘센터 02-335-0101, 천안시 직장맘센터 041-904-3551, 세종시 직장맘센터 044-866-0179, 광주광역시 직장맘센터 062-613-7982		

구분	센터명	사이트 주소	연락처
11	정신건강복지센터	mentalhealth.go.kr	1577-0199
	(지원내용) -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기초 인프라로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및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12	직업트라우마센터	https://kosha.or.kr/healthcenter	1588-6497
	(지원내용) -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력, 성희롱/성폭력, 구조조정이나 해고 등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 대상 상담 제공		
13	블루터치	https://blutouch.net/	1577-0199
	(지원내용) - 서울시정신보건사업의 전반적 상황과 내용, 서울시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소개, 정신 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14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	https://welfare.comwel.or.kr/	080-080-5988
	(지원내용)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제공,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우울, 불안 등)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15	어린이집안전공제회	https://www.csia.or.kr/	1600-0611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제 가입 및 상품 제공 ·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 보상,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 보상, 영유아의 생명·신체 보상 등		



03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 5. 18., 2019. 4. 30.>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신설 2015. 5. 18., 2019. 4. 30., 2024. 2. 6.>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5. 5. 18., 2019. 4. 30.,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 6. 7., 2024. 2. 6.>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14.>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4.>

[본조신설 2015. 5. 18.]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3.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정서 관련 상담
5.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1.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2.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18조의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5. 18.>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20. 12. 29.>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8. 13., 2015. 5. 18., 2020. 12. 29.>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5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⑥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5. 5. 18.,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20조의9(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시책을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수립 또는 변경한 시책을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6.]

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6.]

제20조의11(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해당 시·도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영유아 보육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인 보육교직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고,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시·도지사가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6.]

제20조의12(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영유아의 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8. 6.]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6. 22.] [교육부고시 제2025-16호, 2025. 6. 2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동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교사" 및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서의 "대체교사"로 한다.
3. "취약보육 영유아"란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을 말한다.
4. "영유아 생활지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보육 활동 과정에서 영유아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가. "조언"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나. "상담"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와 소통하여 영유아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모든 의사소통 활동을 말한다.
 - 다. "주의"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 또는 보호자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라. "훈육·훈계"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영유아의 행동을 중재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마. "보상"이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보호자, 영유아의 책무)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 영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생활지도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및 보호자와 교사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행정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영유아와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⑤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보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4조(생활지도의 범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정당한 보육 활동과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어린이집의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5.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6. 언어 사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등 모든 의사소통 행위
7. 영유아 간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8. 취약보육 영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9. 그 밖에 생활지도에 관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5조(조언)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영유아의 사생활에 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상담)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 또는 영유아는 영유아의 문제를 해결이나 추가 지원을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보육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 내용은 해당 영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및 대상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호자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의)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이 어린이집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영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반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영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영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영유아의 행동으로 보육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영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는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8조(훈육·훈계)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영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훈계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가 법령에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영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사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영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다른 법령에 따라 영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교사가 반 분위기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물품
4.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⑥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다른 영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영유아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상)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그 밖에 사항

제10조(취약보육 영유아의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만 3세 미만의 영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이하 '장애아'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원장(이하 '취약보육 어린이집 원장'이라 한다.)은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취약보육 관련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취약보육 어린이집 원장은 취약보육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을 편성하고, 취약보육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와 다른 보육교직원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보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3에 따라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①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 어린이집 원장은 그 밖에 영유아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5-16호, 2025. 6.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04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추진 배경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을 통해 ①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② 보육교직원과 보호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통해 교육·돌봄의 질을 제고

※ 교권 보호 종합방안('23.8.) 및 교권보호 4법* 개정·시행('23.9.)으로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마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24.8.)으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법제화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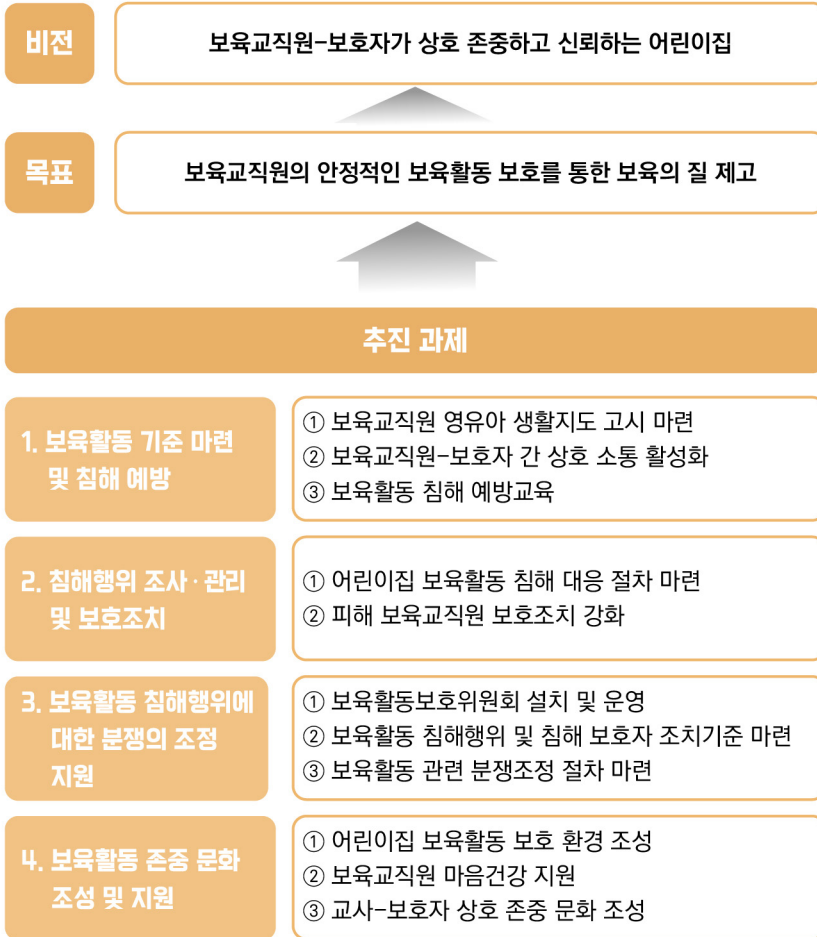
1. 어린이집, 피해를 우려하여 보육활동 침해에 소극적 대응 경향

- 어린이집 피해*를 우려하여 보호자 위주 문제 해결, 침해 인식 부족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54% 보육활동 침해 경험 (36%는 4회 이상 노출)
※ 영유아 수 지속 감소 전망 ('31년 144만 명으로 '22년 188만 명 대비 23.4% 감소, 통계청('24))
* 어린이집 영유아 수 감소('24년 94만명, '22년 대비 16.5% 감소)로 어린이집은 원아 확보에 민감
- 보육활동이 침해되거나, 보육활동 침해 대응 역량이 부족하면,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어린이집 전반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

2. 실질적 보호를 위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제도와 지원 요구

-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더욱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명확한 침해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도입하여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보호조치를 위한 법령 정비 필요
- 특히, 보육교직원의 요구(① 심리상담 및 법률·노무 상담(51%), ② 분쟁 조정 (25%), ③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 교육(24%) 순)를 반영하여 행·재정적 지원 강화 필요

☑ 비전 및 정책방향



☑ 추진 과제

1. 보육활동 기준 마련 및 침해 예방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여 보육활동 기준을 정립하고, 보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의무화

- (생활지도 고시)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25上),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마련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와 구분
 -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영유아 생활지도) 신설('24.8 시행)
- (보호자 소통 활성화) 학부모 대상 입소 오리엔테이션 및 상담 등을 통해 영유아 생활지도와 보육활동 방식을 안내하고 소통
 - 보호자용 어린이집 생활 안내자료집을 개발하여 어린이집 이해도 제고
 -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의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커뮤니케이션 교육 제공
 - ※ ('25) 4회, 4,000명 → ('26) 10회, 10,000명 → ('27) 15회, 15,000명 → ('28) 20회 20,000명
- (침해 예방교육)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매년 보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교육자료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침해 대응 역량 강화

2. 침해행위 조사·관리 및 보호조치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를 위한 합리적 절차 및 피해보육교직원 보호조치 마련

- (어린이집 역량 강화) 보육활동 분쟁 시 보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에 따라 원내 담당자 지정, 피해자 보호조치와 사실조사를 통해 분쟁 조정
 - 원장 요청 외에도 피해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하여 보육활동 보호 강화

- (보호체계 강화) 지자체별로 보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보육활동 분쟁 시 형사 분쟁 관련 보험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
 - (보육활동보호센터) 보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보육교직원 심리 상담 및 법률·노무 상담 지원, 보육활동 보호 프로그램, 홍보자료를 지역 내 확산
 - ※ ('25) 시범운영 및 설치 근거 마련 → ('26) 19개소(중앙 및 광역단위 설치) → ('27~) 기초단위 확대
 - (형사 분쟁 보험 지원) 지자체에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중 형사 분쟁 관련 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25. 下~)하여 실질적 보호 강화
 - ※ 보장범위 안내(6월) → 시도별 '26년 예산 반영(9월) 및 적용('26~) (보육아동 현원 1인당 3.5천원)
 - ※ 보육활동 관련 분쟁에 따른 민사적 책임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 보장 중임

3.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분쟁의 조정 지원

보육활동 침해사안의 공정한 심의와 구속력 있는 조치를 통해 보육활동 침해의 실질적 해결

-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 및 효과적 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중재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25.~)
 - (중앙) ^(구성) 중앙보육정책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 구성
 - ^(가능) 보육활동 보호시책 수립, 조정되지 않은 분쟁 조정 심의 등
 - (시도) ^(구성) 담당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호자, 변호사 등
 - ^(가능)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분쟁의 조정
- (실효적 보호조치) 보육활동 침해의 명확한 기준과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법제화하여, 실효적 보호제도 마련('26.)
- (분쟁조정 절차 마련) 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절차 마련

- (공정한 조사)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업무 상 알게 된 정보 누설 금지 조항 신설
-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보육활동분쟁조정매뉴얼('26.~) 제작을 통해 보육활동 침해 관련 분쟁 조정 세부 절차 및 기준 안내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심의 및 보호조치를 위한 절차(예시)〉



※ 심의 의결사항 최종 통지 전,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보장

4. 보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및 지원

어린이집-지자체-국가차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문화 조성 및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마음건강 지원

- (보호자 인식개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를 활성화하여, 보호자들의 보육활동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 분위기 조성
 - 보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홍보 콘텐츠 제작('25~)하여 지역 내 확산
- (마음건강 지원) 보육활동 중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에게 심리건강 검사 및 정서상담 실시하고, 희망하는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정서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 모든 육아종합지원센터 정서상담 실시 ('25. 72개소 → '28. 140개소)
 - 마음성장프로젝트 대상자를 75천명으로 확대 ('25. 25천명 → '28. 75천명)
- (권익보호 인식 조성) 지방자치단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광역 12곳, 기초 49곳)를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 '상호 존중 캠페인' 및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상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보육환경 조성

05

보육활동 침해 현황



본 조사는 그간의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침해 현황과 지원 요구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조사 내용은 보육활동 중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침해 유형, 침해 경험으로 인한 영향,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방법,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보육활동 보호 지원에 대한 요구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 **조사대상:** 현직 보육교직원 1,498명(원장 535명, 교사 963명)
- ▶ **조사기간:** 2025. 2. 10. ~ 2. 17.
- ▶ **설문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설문조사

1.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 현황 및 유형

보육활동 침해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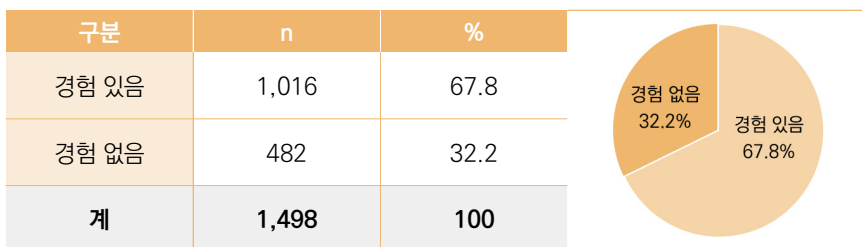
- (직접 경험)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직접적인 보육활동 침해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7.5%(711명)이 '침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함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직접 침해 경험 여부〉

구분	n	%
경험 있음	711	47.5
경험 없음	787	52.5
계	1,498	100

- (간접 경험)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듣거나 목격한 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7.8% (1,016명)이 '간접침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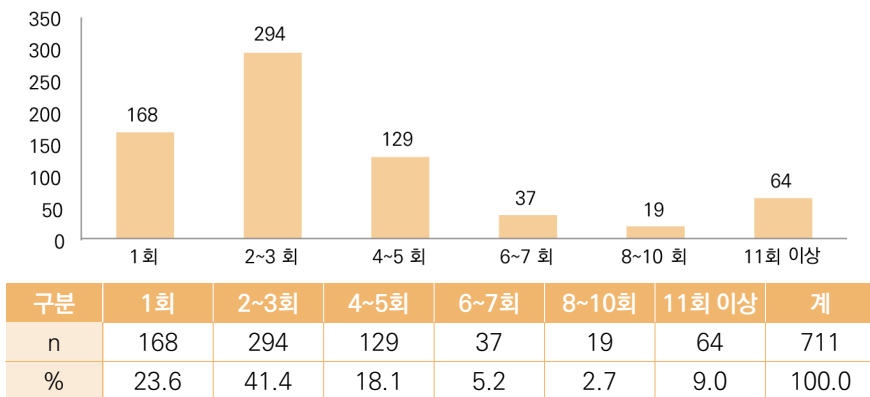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간접 침해 경험 여부〉



☑ 보육활동 침해 경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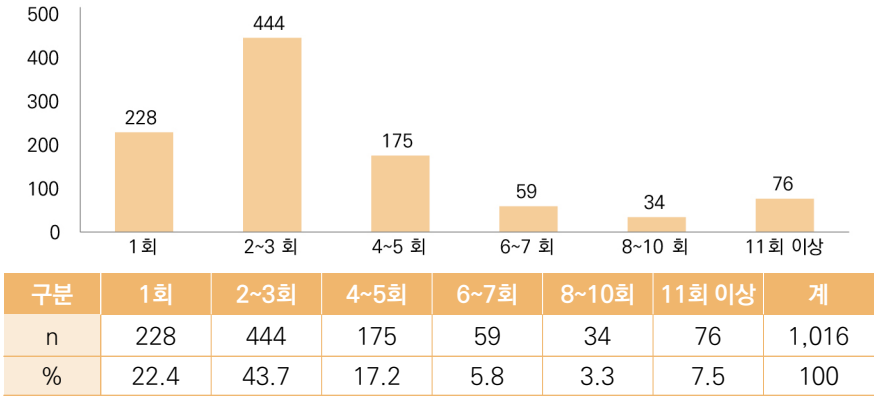
● (직접 경험) 직접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711명) 중 지난 1년간 보육활동 침해 직접 경험 횟수 조사 결과, 41.4%(294명)가 ‘평균 2~3회’ 경험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평균 1회 23.6%(168명), ‘평균 4~5회’ 18.1%(129명) 순으로 응답함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 ‘직접 경험’ 횟수〉



● (간접 경험) 간접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1,016명) 중 지난 1년간 보육활동 침해 간접 경험 횟수 조사 결과, 43.7%(444명)가 ‘평균 2~3회’ 경험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평균 1회 22.4%(228명), ‘평균 4~5회’ 17.2%(175명) 순으로 응답함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 ‘간접 경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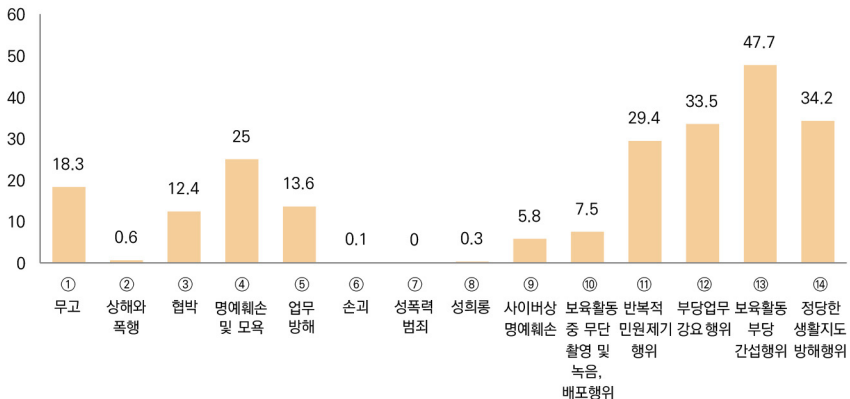


☑ 영유아 보호자에게 받은 보육활동 침해 유형

🟡 (직접 경험) 직접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711명) 중 지난 1년간 영유아 보호자에게 받은 보육활동 침해 유형은 ‘보육활동 부당간섭 행위’가 47.7%(339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 34.2%(243명), ‘부당업무 강요 행위’ 33.5%(238명) 순으로 나타남

※ 중복응답 결과임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직접 침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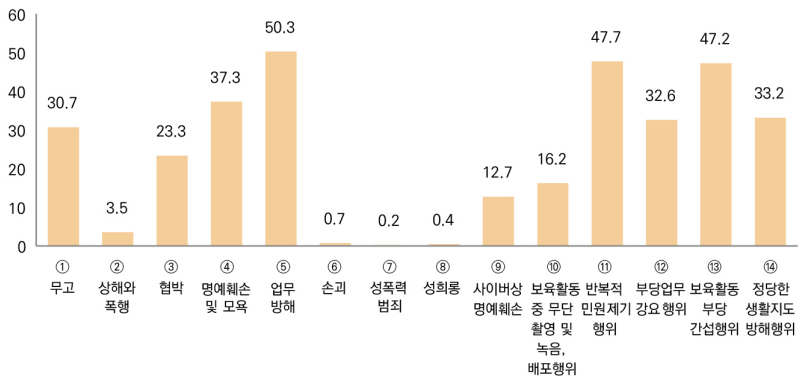


구분	n	%	케이스 중 %
① 무고	130	8.0	18.3
② 상해와 폭행	4	0.2	0.6
③ 협박	88	5.4	12.4
④ 명예훼손 및 모욕	178	11.0	25.0
⑤ 업무방해	97	6.0	13.6
⑥ 손괴	1	0.1	0.1
⑦ 성폭력 범죄	0	0.0	0.0
⑧ 성희롱	2	0.1	0.3
⑨ 사이버상 명예훼손	41	2.5	5.8
⑩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 및 녹음, 배포행위	53	3.3	7.5
⑪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	209	12.9	29.4
⑫ 부당업무 강요 행위	238	14.7	33.5
⑬ 보육활동 부당간섭 행위	339	20.9	47.7
⑭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	243	15.0	34.2

○ (간접 경험) 간접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1,016명) 중 지난 1년간 영유아 보호자에게 받은 보육활동 침해 유형은 ‘업무방해’가 50.3%(511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복적 민원제기’ 47.7%(485명), ‘보육활동 부당간섭 행위’ 47.2% (480명) 순으로 나타남

※ 중복응답 결과임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간접 침해’ 유형〉



구분	n	%	케이스 중 %
① 무고	312	9.1	30.7
② 상해와 폭행	36	1.1	3.5
③ 협박	237	6.9	23.3
④ 명예훼손 및 모욕	379	11.1	37.3
⑤ 업무방해	511	15.0	50.3
⑥ 손괴	7	0.2	0.7
⑦ 성폭력 범죄	2	0.1	0.2
⑧ 성희롱	4	0.1	0.4
⑨ 사이버상 명예훼손	129	3.8	12.7
⑩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 및 녹음, 배포행위	165	4.8	16.2
⑪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	485	14.2	47.7
⑫ 부당업무 강요 행위	331	9.7	32.6
⑬ 보육활동 부당간섭 행위	480	14.1	47.2
⑭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	337	9.9	33.2

시사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는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보육교직원 47.5%가 직접 침해, 67.8%가 간접 침해를 경험했으며, 침해 경험자는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어린이집 현장 전반에 보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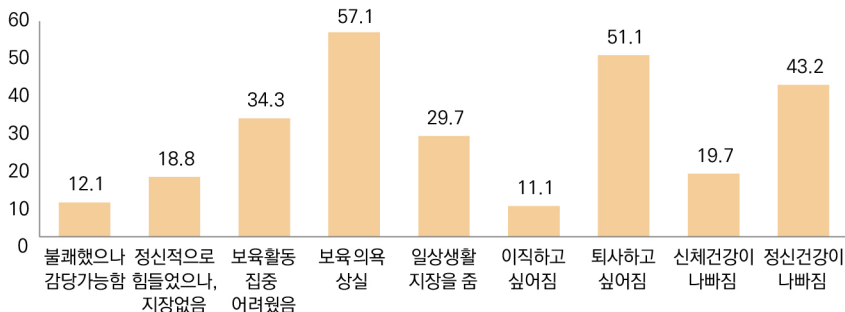
2. 보육활동 침해 경험에 따른 영향

☑ 보육활동 침해 경험으로 인해 본인에게 미친 영향

- (직접 경험)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711명)중 보육활동 침해로 본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57.1%(406명)‘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졌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교직원을 그만두고 싶어졌다’ 51.1% (363명),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 43.2%(307명) 순으로 나타남

※ 중복응답 결과임

〈보육활동 침해 ‘직접 경험’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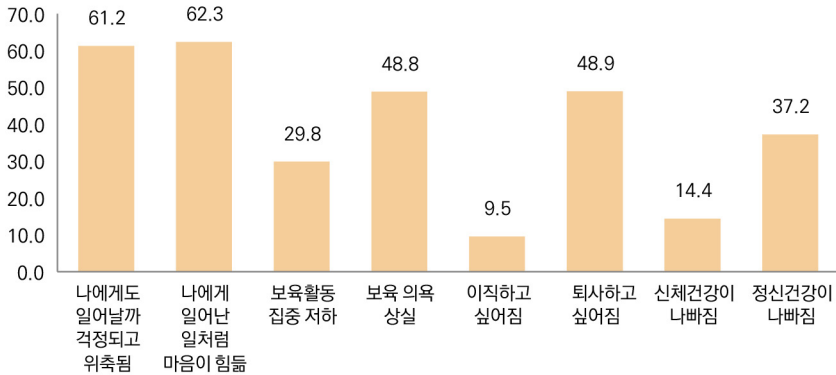


구분	n	%	케이스 중 %
불쾌했지만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다	86	4.4	12.1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보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	134	6.8	18.8
보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244	12.4	34.3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졌다	406	20.6	57.1
보육활동 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줄 정도였다	211	10.7	29.7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고 싶어졌다	79	4.0	11.1
보육교직원직을 그만두고 싶어졌다	363	18.4	51.1
신체 건강이 나빠졌다	140	7.1	19.7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	307	15.6	43.2

- (간접 경험) 간접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1,016명) 중 보육활동 침해 간접 경험으로 본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62.3%(633명) '나에게 일어난 일처럼 느껴져 마음이 힘들었다'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에게도 발생 될까봐 걱정되고 위축되었다' 61.2%(622명), '보육교직원을 그만두고 싶어졌다' 48.9%(497명) 순으로 나타남

※ 중복응답 결과임

〈보육활동 침해 '간접 경험'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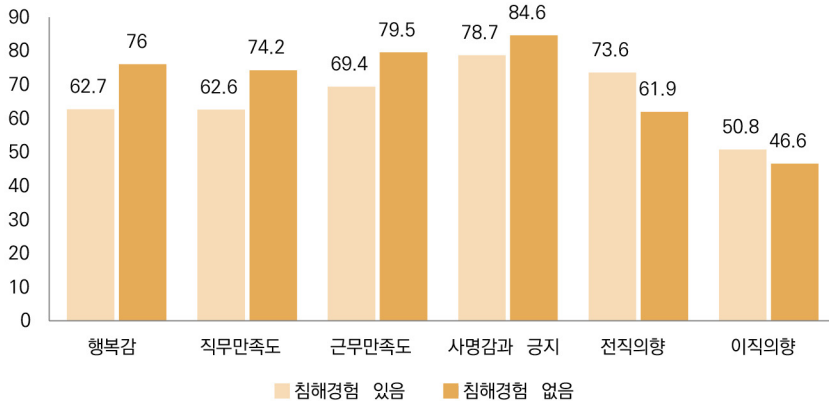


구분	n	%	케이스 중 %
나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되고 위축이 되었다	622	19.6	61.2
마치 나에게 일어난 일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힘들었다	633	20.0	62.3
보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303	9.6	29.8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졌다	496	15.6	48.8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고 싶어졌다	97	3.1	9.5
보육교직원직을 그만두고 싶어졌다	497	15.7	48.9
신체 건강이 나빠졌다	146	4.6	14.4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	378	11.9	37.2

☑ 보육활동 침해 경험 유무에 따른 직무 태도의 차이

- 전체 응답자(1,498명) 중 보육활동 침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행복감, 직무 및 근무 만족도, 사명감 및 공지에 대한 문항에서 평균 10.2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직 및 이직 의향이 침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평균 8.0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침해 경험 유무에 따라 직무 태도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행복감'의 경우 침해 경험이 없는 사람의 평균이 침해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13.3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무 태도의 차이를 보임

〈보육활동 침해 경험 유무에 따른 직무 태도의 차이〉



구분	침해경험 있음 (점/100점 만점)	침해경험 없음 (점/100점 만점)
나는 보육교사로서 행복하다	62.7	76.0
보육교사로서 현재 직무에 만족한다	62.6	74.2
현재 재직 중인 어린이집에서의 근무 만족도가 높다	69.4	79.5
나는 영유아와 함께하는 보육교사로서 사명과 공지를 느낀다	78.7	84.6
기회가 있다면 다른 직종으로 바꾸고 싶다	73.6	61.9
기회가 있다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고 싶다	50.8	46.6

시사점

- 보육활동 침해 직·간접 경험 모두 교직원에게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침해 경험 후 ‘의욕 상실’, ‘이직 충동’, ‘정신 건강 저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간접 침해의 경우도 직접 경험에 준하는 심리적 부담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 지원 및 심리·정서 회복 지원 중심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육활동 침해는 보육교직원 직무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육활동 침해 경험자들은 행복감, 직무만족도, 사명감 등에서 침해 경험이 없는 대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직 의향 또한 평균 8점 이상 높아, 장기근속 및 인력 안정성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근로의욕 유지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육활동 보호 지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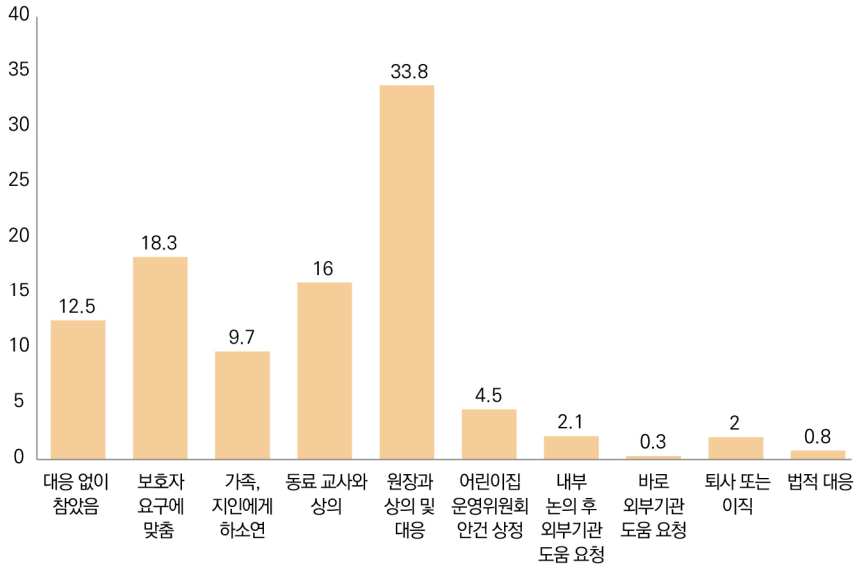


3.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 대응 현황

☑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방법

-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711명)의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장과 상의하고 대응했다'가 33.8%(240명)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무조건 보호자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했다' 18.3%(130명), '어린이집 동료 교사들과 상의하고 대응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6.0%(114명)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법적으로 대응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0.8%(6명),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0.3%(2명)로 가장 낮게 나타남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방법〉



구분	n	%
특별한 대응 없이 참았다	89	12.5
무조건 보호자의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했다	130	18.3
가족이나 지인에게 하소연을 했다	69	9.7
어린이집 동료 교사들과 상의하고 대응했다	114	16.0
어린이집 원장과 상의하고 대응했다	240	33.8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논의했다	32	4.5
내부 논의 후 외부기관에 상담 혹은 도움을 요청했다	15	2.1
기관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바로 외부기관에 요청했다	2	0.3
퇴사 혹은 이직을 했다	14	2.0
법적으로 대응했다	6	0.8
계	711	100

☑ 보육활동 침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

- ① 위의 침해 대응 방법에 ‘특별한 대응 없이 참았다.’, ‘무조건 보호자의 요구에 맞추려고 했다.’, ‘가족과 지인에게 하소연했다.’, ‘퇴사 혹은 이직했다.’ 라고 응답한 보육교직원 대상(202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장 38.9%가 ‘오히려 더 심각한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교사 28.7%가 ‘보호자의 과도한 불만이나 요구 등은 부당하더라도 최대한 맞추어 주도록 교육받아서’를 1순위로 응답함
- ② 또한 2순위로 원장 29.8%가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피해를 줄까봐’, ‘오히려 더 심각한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으며, 교사 24.6%가 ‘오히려 더 심각한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라고 응답함
- ③ 응답 순위를 종합한 결과, 원장의 경우 83.2%가 어린이집 혹은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갈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염려로, 교사 66.1%가 악성 민원에 대한 염려를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음

〈보육활동 침해 적극적 대응 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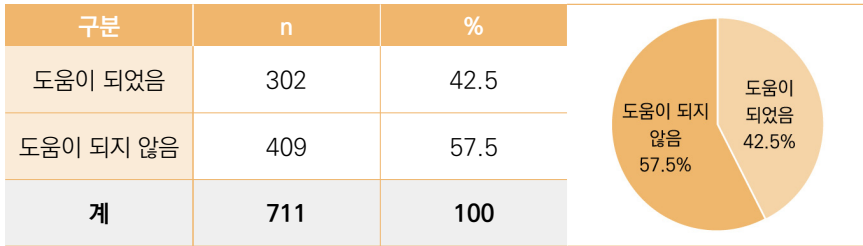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원장	1순위	17	25	33	51	2	1	1	0	1	131
		13.0	19.1	25.2	38.9	1.5	0.8	0.8	0.0	0.8	100.0
	2순위	6	33	39	39	4	2	5	1	2	131
		4.6	25.2	29.8	29.8	3.1	1.5	3.8	0.8	1.5	100.0
	3순위	9	25	37	12	14	8	9	3	14	131
		6.9	19.1	28.2	9.2	10.7	6.1	6.9	2.3	10.7	100.0
1+2+3 순위	32	83	109	102	20	11	15	4	17	393	
	24.4	63.4	83.2	77.9	15.3	8.4	11.5	3.1	13.0	300.0	
교사	1순위	14	49	36	32	8	3	4	24	1	171
		8.2	28.7	21.1	18.7	4.7	1.8	2.3	14.0	0.6	100.0
	2순위	7	36	39	42	12	3	7	22	3	171
		4.1	21.1	22.8	24.6	7.0	1.8	4.1	12.9	1.8	100.0
	3순위	9	25	20	39	17	9	15	26	11	171
		5.3	14.6	11.7	22.8	9.9	5.3	8.8	15.2	6.4	100.0
1+2+3 순위	30	110	95	113	37	15	26	72	15	513	
	17.5	64.3	55.6	66.1	21.6	8.8	15.2	42.1	8.8	300.0	

- 주: ① 보육활동 침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해서(일상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② 보호자의 과도한 불만이나 요구 등은 부당하더라도 최대한 맞추어 주도록 교육받아서
 ③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피해를 줄까봐
 ④ 오히려 더 심각한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⑤ 오히려 신분상의 불이익(예: 권고사직 등)을 받게 될까봐
 ⑥ 누군가와 이야기만 나눠도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서
 ⑦ 비밀보장이 어려울 것 같아서
 ⑧ 비밀보장이 어려울 것 같아서
 ⑨ 대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방법의 도움 정도**

-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711명)의 현재 어린이집에서의 보육활동 침해 대응방식의 도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7.5%(409명)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고 응답함

〈현재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방식 도움도〉



시사점

- 보육활동 침해 대응 시 법적 대응 또는 외부기관 요청은 1.1%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원장과 상의하거나 보호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어 어린이집 대응 방식은 매우 소극적이며 외부 지원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는 악성 민원 발생 우려, 어린이집 피해 확산 우려 등 어린이집 운영 유지 및 보호에 대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해 별도 외부 기관을 통한 지원 및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제시, 실효성 있는 보육교직원 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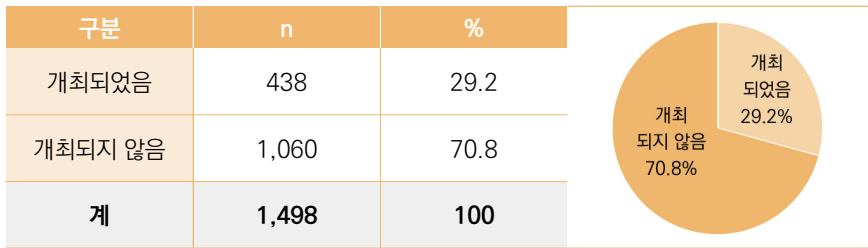


4.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 전체 응답자(1,498명) 대상 지난 1년간 '보육교사 권익보호 사안'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조사 결과, 29.2%(438명)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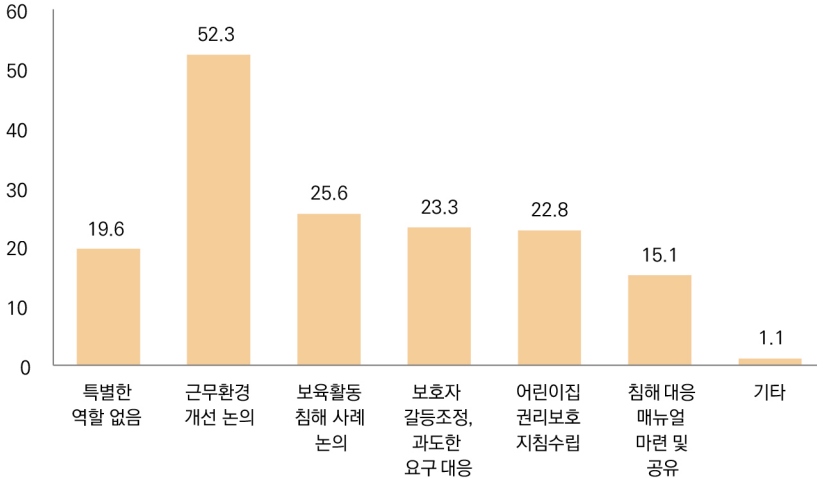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역할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응답한 대상(438명)의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결과, 52.3%(229명)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6%(112명)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 사례 논의', 23.3%(102명) '보호자와의 갈등 조정 및 보호자의 과도한 요구 대응' 순으로 응답함

※ 중복응답 결과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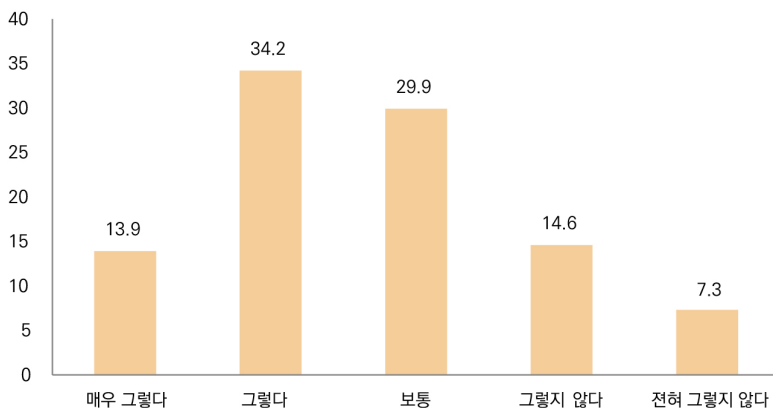


구분	n	%	케이스 중 %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음	86	12.3	19.6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	229	32.7	52.3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 사례 논의	112	16.0	25.6
보호자와의 갈등 조정 및 보호자의 과도한 요구 대응	102	14.6	23.3
어린이집 내부의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 지침 수립	100	14.3	22.8
보육활동 침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공유	66	9.4	15.1
기타	5	0.7	1.1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기여 정도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응답한 대상(438명)의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기여 정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48.1%(211명)으로 나타남

〈현재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방식 도움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n	61	150	131	64	32	438
%	13.9	34.2	29.9	14.6	7.3	100.0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실효성 제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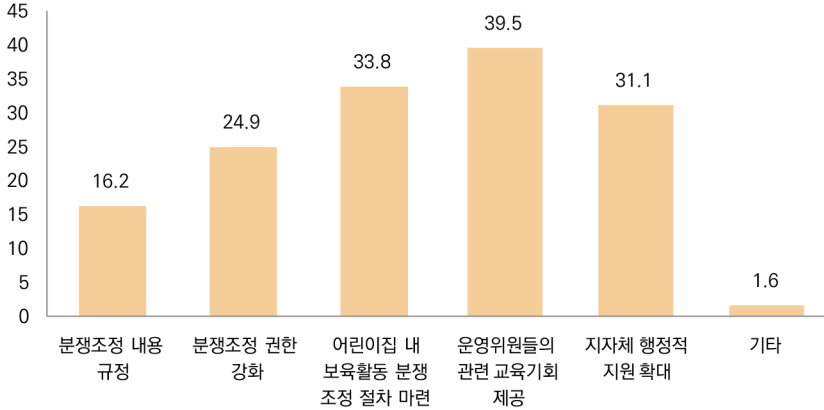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응답한 대상(438명)의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실효성 제고 방안을 조사한 결과, 39.5%(173명) ‘운영위원들의 관련 교육 기회 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3.8%(148명) ‘어린이집 내 보육활동 분쟁 조정 절차 마련’, 31.1%(136명) ‘지자체 행정적 지원 확대’ 순으로 응답함

※ 중복응답 결과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방안〉

구분	n	%	케이스 중 %
운영위원회 심의사안으로 분쟁 조정내용 규정	71	11.0	16.2
운영위원회 분쟁 조정 권한 강화	109	16.9	24.9
어린이집 내 보육활동 분쟁 조정 절차 마련	148	23.0	33.8
운영위원들의 관련 교육기회 제공	173	26.9	39.5
지자체 행정적 지원 확대	136	21.1	31.1
기타	7	1.1	1.6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방안〉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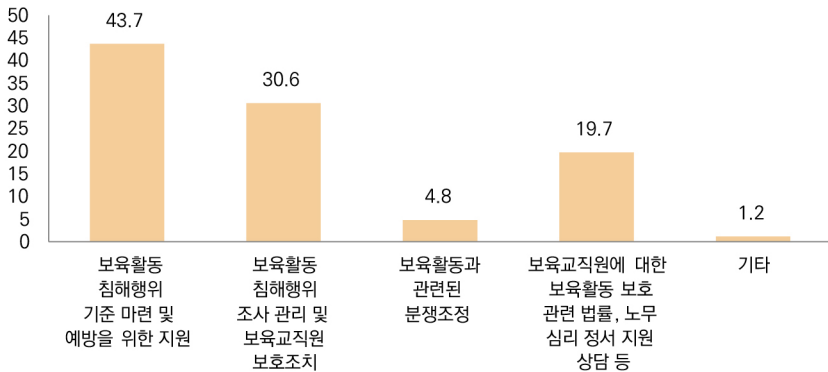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중 ‘보육교사 권익보호 사안’으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곳은 29.2%에 불과했으며, 운영위원회가 운영된 경우에도 실질적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에 대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기여도는 절반 미만(48.2%)으로, 이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교육, 보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며,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능을 강화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역할 재정립 및 지원이 필요함

5. 보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 요구도

☑ 보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한 요구 우선순위

- 전체 응답자(1,498명) 중 보육활동 보호 지원 필요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보육활동 침해행위 기준 마련 및 예방을 위한 지원’이 43.7%(665명)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보육활동 침해행위 조사 관리 및 보육교직원 보호조치’ 30.6%(458명),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심리정서 지원 상담 등’ 19.7%(295명) 순으로 나타남

〈보육활동 보호 지원 필요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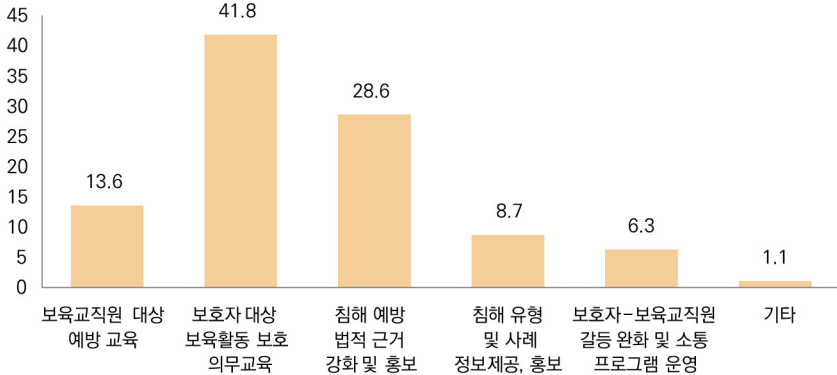


구분	n	%
보육활동 침해행위 기준 마련 및 예방을 위한 지원	655	43.7
보육활동 침해행위 조사 관리 및 보육교직원 보호조치	458	30.6
보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72	4.8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심리 정서 지원 상담 등	295	19.7
기타	18	1.2
계	1,498	100

☑ 보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전체 응답자(1,498명) 중 보육활동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보육활동 보호 교육 의무화’가 41.8%(626명)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보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및 홍보’ 28.6%(428명), ‘보육교직원 대상 보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13.6%(203명) 순으로 나타남

〈보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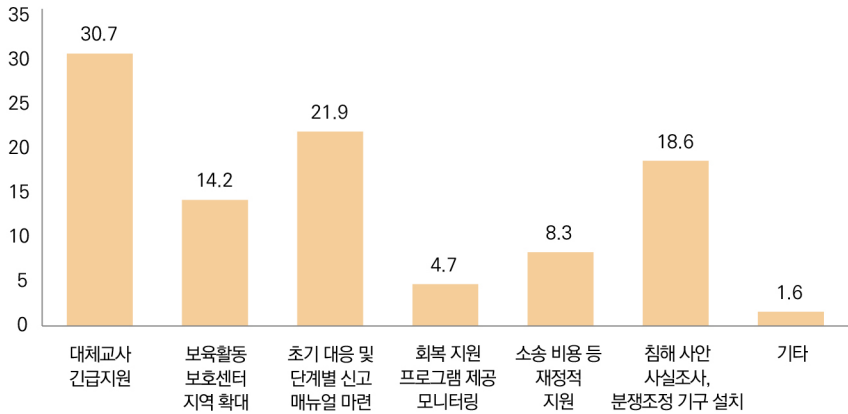


구분	n	%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203	13.6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보육활동 보호 교육 의무화	626	41.8
보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및 홍보	428	28.6
보육활동 침해 유형 및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	130	8.7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의 갈등 완화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95	6.3
기타	16	1.1
계	1,498	100

☑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및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지원

● 전체 응답자(1,498명) 중 보육활동 침해 대응 및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교사 분리조치를 위한 대체교사 긴급지원(1일~10일내)’이 30.7%(460명)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초기 대응 및 사안별 신고 단계 매뉴얼 마련’ 21.9%(328명), ‘보육활동 침해사례 발생 시 사실조사, 분쟁 조정 기구 설치 운영’ 18.6%(278명) 순으로 나타남

〈보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우선순위〉



구분	n	%
교사 분리조치를 위한 대체교사 긴급지원(1일~10일내)	460	30.7
지역별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센터(전문상담 지원)설치 및 운영확대	213	14.2
초기 대응 및 사안 별 신고 단계 매뉴얼 마련	328	21.9
회복 지원 프로그램 제공 모니터링	70	4.7
소송비용 등 재정적 지원	125	8.3
보육활동 침해사례 발생 시 사실 조사, 분쟁조정 기구 설치 운영	278	18.6
기타	24	1.6
계	1,498	100

시사점

-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보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보호자 대상 교육, 보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체교사 지원, 초기 대응 매뉴얼, 분쟁조정 기구 설치 등 보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 대응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보호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적인 대응 체계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으로 '예방-대응-회복 지원' 체계로 종합적인 접근방식의 정책이 요구됨
- 보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요구 중 '보호자 대상 보육활동 보호 교육 의무화'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보호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의무화 제도 마련 및 교육자료 개발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종합 시사점

-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침해는 단순 민원이 아닌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성과 직무 지속성, 나아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임
- 따라서,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대응-회복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적 보호 체계 마련과 함께, 보육교직원 중심의 보호 지원 강화, 보호자 대상 교육,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육활동 보호 기능의 실효성 확보 등 종합적인 보육활동 보호 지원 방안이 요구됨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발행일	2025년 10월
발행처	한국보육진흥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6층 Tel. 1661-5666
집필진	김정화(국립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김윤아(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본부 본부장) 권기남(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서영주(한국보육진흥원 권리정서지원부 부장) 박진주(한국보육진흥원 권리정서지원부 차장) 조하나(한국보육진흥원 권리정서지원부 대리)
협력관	이병승(교육부 영유아교원지과 과장) 전상희(교육부 영유아교원지과 사무관)
검토진	김진옥(한국보육지원학회 학회장) 변성숙(에듀로(Edu-law) 교육법률 연구소 변호사) 이남정(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정효정(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학회장)
편집디자인	디자인여백플러스

